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0-110호
2020. 12. 11.(금)

차 례

조 례 (15)

-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79호) 1
- 어려운 한자어 장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번화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80호) ... 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조례 제1481호) 1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조례 제1482호) · 19
-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83호) 4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조례 제1484호) 53
-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85호) 58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486호) ... 66
-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87호) .. 77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조례 제1488호) 84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89호) 8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조례 제1490호) 92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조례 제1491호) 96
-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조례 제1492호) 101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조례 제1493호) 107

규 칙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03호) 1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04호) 12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사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규칙 제905호) 187

고 시 (1)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0-138호) 190

공 고 (7)

-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예고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179호) 191
- 도시계획시설(원바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고(공고 제2020-1181호) 194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183호) 195
-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공고 제2020-1186호) 196
-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187호) 198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0-1193호) 200
- 공인(전자이미지공인)등록 공고 제2020-1195호) 203

입법예고 (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188호) 204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192호) 235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0-1199호) 241

공									
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7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체결한 후 위탁계약 사항을 공증”을 “체결”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위탁계약 사항을 공증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체결) ① ----- ----- ----- 체결-----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①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② 수탁기관의 사무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외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절차를 없애고 수탁기관 사무처리와 관련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통일된 규율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간위탁 협약 시 불필요한 공증의무 절차를 삭제함(제16조).
- 수탁기관 사무처리에 대한 이의신청 청구 조항을 삭제함(제2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0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불변기일을 넘김

제2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 중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를 “감염병에 걸려”로 한다.

제3조(「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순화 양양에”를 “순화에”로 한다.

제4조(「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5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제1조(대전광역시 대덕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생 략)	제3조(위촉 및 해촉)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② -----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	4. ----- -----
가. 불변기일 도과	가. 불변기일을 넘김
나.·다. (생 략)	나.·다.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 시민교육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발전을 위한 지식·사고·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④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이 건강한 토론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⑤ 모든 구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⑥ 민주시민교육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민주시민교육 대상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구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
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자원 및 자원조달에 관한 사항
4. 민주시민교육 강사의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기반기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와 구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구청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 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

2.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

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

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

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

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구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통장, 주민자치회 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

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 민주시민교육 관련 공무원
3.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
4.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
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대덕구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이수증의 발급)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일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민주시민교육이수증을 발급한다.

제16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및 개인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줄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덕구민의 민주시민교육을 통한 개개인의 민주시민 의식을 제고하여 민주주의를 올바르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의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부터 제12조까지).
- 민주시민교육의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3조 및 제14조).
- 민주시민교육의 교류협력 및 표창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6조 및 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등에 설치되고 주민으로 구성되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의 자치활동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2. “주민자치회 위원”이란 해당 동의 주민을 대표하는 주민자치회의 구성원을 말한다.
3. “주민총회”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하여 자치활동을 논의하고 결정하는 주민공론장을 말한다.
4. “마을계획”이란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주민자치회가 수립하는 주민자치 및 마을발전, 민관협력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말한다.
5.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등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의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운영원칙)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한다.

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
2. 주민 참여 보장 및 자치활동 활성화

3. 구·동 행정과의 거버넌스(governance) 및 자율성 확보
4.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설치 등)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기능) 주민자치회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주민자치 업무: 주민총회 개최, 마을계획 수립, 마을 축제, 마을신문·소식지 발간, 각종 교육·행사 등 주민자치업무
2. 협의업무: 동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
3. 수탁업무: 구 및 동 행정기능 중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

제6조(주민자치회 정수)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3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의 자격)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제8조에 따른 공개 모집한 날 현재 만 18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1.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3. 해당 동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4. 해당 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기관, 단체의 임·직원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공개모집 신청자 중 주민자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공개추첨으로 선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총원의 10분의 6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주민자치 교육과정의 이수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주민자치 활동에 관한 기본교육과정을 최소 6시간 이상 사전 이수한 것을 의미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항에서 선정된 주민자치회 위원 외에 예비후보자 순위를 10명 이내에서 추첨으로 정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과 예비후보자를 선정할 날로부터 10일 이내 그 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촉한다. 다만, 전임 위

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에는 명부순위 순으로 위촉한다.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8조제1항, 제2항, 제5항에 따라 위촉한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구성 후 주민자치회 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⑧ 주민자치회 위원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주민자치회 내에 위원 추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⑨ 구청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공개 모집 사실을 설명회의 방식으로 홍보할 수 있다.

⑩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및 「민법」 제779조에 따라 가족관계에 있는 자는 1인만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이 주어진다.

제9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을 1명 부회장을 2명 이내로 두되, 자치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를 대표하며 주민자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③ 자치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자치회장 및 부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0조(간사 또는 사무국)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주민을 간사로 선임하거나, 사무국을 설치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하거나 사무국에 배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무국을 설치하는 경우, 근무자 배치, 수행업무 등 사무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④ 자치회장은 제1항에 따른 간사 및 사무국 근무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감사) ① 주민자치회에 감사를 2명 이내로 두며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외부 전문가를 감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감사는 주민자치회의 회계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사항의 집행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주민자치회와 주민총회에 보고·제출하여야 하며,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①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과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할 수 있다.

- ③ 분과위원장은 제2항의 주민자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운영 결과를 주민자치회에 보고해야 한다.
- ⑤ 그 밖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에서 결정한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3조(주민총회) ① 주민총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주민자치회에서 의결된 안건을 상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에 따라 개최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주민총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며, 제1항에 따라 상정된 안건은 참석 주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1. 주민자치회 활동 및 결산
2. 동 행정사무에 대한 의견제시
3. 마을계획안
4. 주민자치회 예산안
5. 그 밖에 지역 현안, 주민자치, 민관협력 등에 관한 사항의 보고와 결정 등

③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와 숙의를 촉진하기 위하여 주민총회일 1개월 전부터 상정 안건 홍보, 주민설명회, 의견수렴 등을 진행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합의를 형성하기 위하여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투표를 진행 할 수 있다.

⑤ 주민자치회는 해당 동의 관계공무원에게 주민총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 및 해당 동장은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지역 주민이 직접 발언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개최 후 14일 이내에 개최결과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30일 이상 공개한다.

⑧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주민총회에 참여한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제14조(마을계획의 구성 등) 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의 의견과 요구를 수렴하여 다음 각 호의 세부계획으로 구성된 마을계획안을 수립한다.

1. 주민자치회 운영계획
2.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와 연계한 마을발전 활성화 계획
3. 행정사무 수탁 및 추진계획
4.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5. 분과별 사업계획
6. 주민자치 관련 예산 편성안
7. 그 밖의 주민자치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계획

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계획안은 주민총회에 상정하여 의결하고, 주민자치회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마을계획안을 14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③ 구청장은 주민의 공론인 마을계획안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재정적 협력과 지원을 해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마을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 등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해당 주민자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는 제3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참고하여 마을계획을 확정·의결하고, 확정된 마을계획을 동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운영) ① 주민자치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동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의개최 통지는 자치회장 명의로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동의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요구를 할 수 있으며, 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수행업무 중에서 주요사항에 대하여 문서회람, 공고 등을 통해 주민의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주민자치협의회) 동별 주민자치회 운영·관리 등 상호 필요한 정보교환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자치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7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동별 주민자치회장으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 및 사무국장은 각 1명으로 협의회 위원 중 호선한다.

③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의 경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며, 궐위에 따라 새로 선출된 회장 및 사무국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장 주민자치회의 위원

제18조(위원의 의무) ①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주민자치회 운영에 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 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주민자치회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정치적 중립)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정치적 중립의 의무를 가지며, 「공직선거법」 제6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한차례 연임 이후에는 신규위원과 동일하게 추천방법에 따른다. 다만, 제8조제6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1조(위원의 대우)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 해촉이 된 것으로 보며, 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주민자치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2. 2개동 이상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선정되거나, 제7조 단서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선거운동을 하거나,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경우
4. 특별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권한남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익추구금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6. 직무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위원 스스로 사퇴한 경우

② 주민자치회의 위원은 다른 위원에게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連書)로 위원의 해촉을 구청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을 요청할 때에는 사유서와 의결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장 주민자치센터

제23조(설치) ① 주민자치센터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제24조(기능) 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먹거리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
6. 내집앞 청소하기, 사회적 약자 보호 등 지역사회기능

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25조(시설 및 프로그램)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가 제24

조에 따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시설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26조(운영)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위원 또는 분과위원에게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제27조(강사) ① 주민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28조(사용료등) 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이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주민자치회에서 징수한다.

③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별표 1의 기준과 범위에서 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회에서 정한다.

④ 사용료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가 징수한 사용료등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한다. 주민자치회는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작성하여 반기경과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는 사용료등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되 그 명칭은 「○○동 주민자치회」로 한다.

⑧ 수강의 취소 등으로 인한 수강료 반환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제29조(이용 등) 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때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제28조에 따른 사용료등의 징수대상 시설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④ 주민자치회는 주민이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회복을 위하여 동장과 협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30조(주민참여) ①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② 관할 구역 내의 주민이나 단체는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동장 또는 주민자치회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1조(제출) 주민자치회는 동장과 협의를 거쳐 매년 8월말일까지 익년도 주민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

제32조(지방자치단체의 지원)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동 주민을 위한 공공사업을 추진하거나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주민자치회가 대표적 주민참여기구로서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기구, 도시재생주민협의체 등 주민참여기구를 대체하거나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여건을 조성하는 등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자치회 위원 및 주민의 자질 함양과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시책 수립을 위하여 해당 동장 및 자치회장은 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⑥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의견을 들어 해당 지역 동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 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전용 사무실을 제공할 수 있다.

⑧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 하여금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3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조) ① 자치회장은 주민자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다른 주민자치회와 공동 추진이 필요한 경우, 해당 주민자치회와 협의하여 별도의 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선출된 구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거주지동 주민자치회에 출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장 보칙

제34조(감독) ① 구청장은 주민자치회에 위탁한 업무와 재정지원 분야 등에 관하여 관련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35조(보험) 구청장은 제5조의 사무를 수행하는 주민자치회 종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36조(운영세칙) 그 밖에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대전광역시 대덕구 주민학습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

제4조(적용례) 제8조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8조에 따라 최초로 선정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별표 1]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제28조제3항 관련)

구분	징수대상	징수범위	요율
사용료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프로그램	시설, 장비, 기기 등을 사용하여 전기료, 냉·난방비, 상·하수도료 등의 비용이 수반되거나 유지관리(수리·교체포함)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그램	1인당 월 10,000원 이하
수강료	취미·교양·문화·여가 등의 기능과 주민교육 기능을 위한 프로그램	강사료와 재료비 등에 소요되는 프로그램 운영 경비를 수강생이 일정액을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프로그램	1인당 월 30,000원 이하 ※ 프로그램별로 수강 기간과 수강 인원을 감안하여 조정

[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제28조제5항 관련)

감 면 대 상	감면비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가족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 6) 미성년의 세 자녀 이상을 둔 부모 및 그 자녀 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사용료 : 100% 수강료 : 100%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사용료 : 100% 수강료 : 50%
※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 해당 증명서	

※ 수강료 감면은 프로그램 운영단위별(상·하반기 및 여름·겨울방학특강 등) 2 과목으로 한정

수강료 반환기준(제28조제8항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 환 금 액
1. 주민자치센터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			전액환급
2. 프로그램 폐강이 결정된 경우			전액환급
3. 수강생이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가.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개시 전	전액환급
		총 강의시간의 1/3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시간의 1/2경과 전	이미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나.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개시 전	전액환급
		강의개시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 (수강료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 고		총 강의시간은 수강료 징수기간 중의 총 강의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주민자치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의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과 주민자치회 위상 강화 등 제도개선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명을 변경함(제명).
- 주민자치회의 기능 규정을 정비함(제5조).
- 주민자치회 위원 정수를 최소 30명 이상으로 변경함(제6조).
-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으로 낮추고 일정요건을 갖춘 외국인 주민도 포함함(제7조).
- 주민자치회위원 모집 설명회 등 행사 개최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제8조).
- 자치회장 및 부회장 연임의 경우 선출방식을 명확하게 함(안 제9조).
-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부터 제22조까지).
-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3조부터 제31조까지).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 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에 “제1장 총칙”을 삽입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와”를 “다음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평생학습도시”란 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를 ““평생학습도시”란”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배달강좌”란 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
6.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구청장은 주민에게 지역 정체성과 애향심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 수립·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평생학습의 기회를 부여 받을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후단 중 “평생학습기관·단체·시설 및 학교”를 “평생학습기관·단체”로, “경비지원과”를 “경비를 지원 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다.

제6조 앞에 “제2장 평생학습협의회 등”을 삽입한다.

제7조제2호 중 “기관·단체·시설 및 학교”를 “기관·단체”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기관·단체·시설”을 “기관·단체”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중 “도서관·문화원·주민학습문화센터·복지관”을 “도서관·문화원·주민자치센터·복지관”으로 한다.

제17조 앞에 “제3장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을 삽입한다.

제18조의2제1항 중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을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기타의 유휴공간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시설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

하여 주민자치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3(배달강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배달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달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②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

제21조제3호 중 “본인의 의사로”를 “스스로”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프로그램 수강료(제20조 관련)

구분	수강료	비고
인문, 취미, 교양 등 일반 프로그램	월 30,000원 이하	· 재료비, 교재비 본인 부담 · 수강시간 및 인원 등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조정가능
배달강좌	1팀당 50,000원 이하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장 총칙</u>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u>다음 각 호와 같다.</u>	제2조(정의) ----- ----- <u>다음과</u>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평생학습도시”란</u> <u>구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를 구축하고 학습을 통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 제고, 사회적 통합을 이룩하여 지역사회복지 실현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u>	2. <u>“평생학습도시”란</u> ----- ----- ----- ----- ----- ----- ----- ----- -----.
3. 4. (생 략)	3. 4. (현행과 같음)
<u><신 설></u>	5. <u>“배달강좌”란</u> <u>구민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평생학습서비스를 말한다.</u>
<u><신 설></u>	6. <u>“민주시민교육”이란</u> <u>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으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u>

1. (생략)
2. 도서관·문화원·주민학습문화센터·복지관 등의 평생학습 담당자
3. (생략)
- ③·④ (생략)

<신설>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구청장은 동별 주민을 대상으로 하여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학습 상담을 제공하는 동 단위 평생학습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동 단위 평생학습시설은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과 지역사회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 및 지역자원 등을 발굴·연계하여 운영한다.

<신설>

<신설>

1. (현행과 같음)
2. 도서관·문화원·주민자치센터·복지관 -----
3. (현행과 같음)
- ③·④ (현행과 같음)

제3장 평생학습센터 등 운영

제18조의2(동 평생학습시설의 운영) ① ----- 주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기타의 유휴공간에 -----.

②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동 주민자치센터를 동 평생학습시설로 지정하여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통한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를 위하여 주민자치회와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8조의3(배달강좌의 운영)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의 평생학

<신설>

제19조(수강 자격)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 수강 자격은 대덕구민으로 하되, 대덕구 관내에 있는 학교의 재학생 및 직장 등의 재직자도 수강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평생학습센터 프로그램을 수강하는 사람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수강료를 미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강좌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습 진흥을 위하여 배달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배달강좌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의4(민주시민교육의 운영)

① 구청장은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하여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자원봉사자) 구청장은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적극 모집 활용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수강료 징수) ① 수강료는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며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p>있다.</p> <p><신 설></p> <p>제21조(수강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p> <p>1. 2. (생 략)</p> <p>3. 수강생이 <u>본인의 의사</u>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p>	<p>② 평생교육 강좌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 무료로 할 수 있다.</p> <p>제21조(수강료 반환)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 스스로 ----- -----</p>
---	--

<p>【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1. 개정이유</p> <p>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민자치회 운영, 배달강좌,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약자의 평생교육 등 사업 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평생학습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달강좌 및 민주시민교육의 정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제2조, 제18조의3 및 제18조의4). ○ 지역 정체성 함양을 위한 역사·문화 교육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평생교육을 기본원칙으로 신설함(제3조). ○ 동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18조의2). ○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실비 지원의 근거를 마련함(제19조). ○ 배달강좌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의 수강료에 대한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함(제20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 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

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구성) 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육공동체과장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

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소속 공무원
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
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
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 임무) 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 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

1. 상황총괄팀
 2. 모집·배치팀
 3. 활동관리팀
 4. 활동지원팀
 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
- 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
3. 자원봉사자의 규모
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
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 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지역대책본부장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 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7조의2제5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단장의 임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실무팀의 편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 시 고려할 사항을 정함(제7조).
-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8조).
- 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9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 중 “경로대상자, 국가유공자”를 “경로대상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13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제5호까지”를 “제13호까지”로 한다.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 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별표 2 중 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적 요		사 용 료				비 고
			이용 구분	어 른	청소년	어린이	
1	대덕문화체육관		월 회원권	30,000	22,000	15,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 및 단체 월 회원권 입장자는 5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200	1,700	1,400	
2	대덕	수영장 (자유 이용)	월 회원권	52,000	38,000	29,000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4,300	2,700	2,000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월 회원권	62,000	48,000	39,000	
			월 회원권		40,000		
			1회 이용		2,000		
	다목적실	월 회원권		50,000		○프로그램 참가 월 회원	
3	실외 테니스장	실외코트 (1면,1시간)		2,000		○조명사용 시 3,000원 추가	
4	로하스 산호빛 공원 야외수영장	1회 이용	5,000	4,000	3,000	○만 6세 미만의 영·유아는 입장 시 보호자 동반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5	대청수상레포츠센터	카누·카약	1회 이용	25,000	23,000	20,000	○입장가능 연령을 만 7세 이상으로 제한 ○1회 이용 단체 입장자는 20%를 감액한 사용료를 징수
			1회 이용	20,000	18,000	15,000	
		오리배	1회 이용	10,000	6,000	4,000	
		노보트	1회 이용		20,000		
		수상자전거 (2인승)	1회 이용		12,000		
		수상자전거 (3인승)	1회 이용		15,00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료에 관한 특례) ① 대덕문화체육관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2021년 2만3천원, 2022년 2만6천

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1만7천원, 2022년 1만9천원으로, 어린이는 2021년 1만1천원, 2022년 1만3천원으로 한다.

②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자유이용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2021년 4만원, 2022년 4만5천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2만9천원, 2022년 3만3천원으로, 어린이는 2021년 2만원, 2022년 2만4천원으로 한다.

③ 대덕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강습 월회원에 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른은 2021년 5만4천원, 2022년 5만8천원으로, 청소년은 2021년 4만2천원, 2022년 4만5천원으로, 어린이는 2021년 2만6천원, 2022년 3만2천원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체육시설 사용료 등의 징수 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사용료 등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u>별도로 부과하여야 한다</u> . 다만, 제17조에 의거 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는 별표 2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부과·징수) ① ----- ----- -----포함한다. ----- ----- -----.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실제 사용한 부속설비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 1. · 2. (생략) 3. 장애인, <u>경로대상자</u> , 국가유공자가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4. (생략) <u><신 설></u>	제11조(사용료 감면) ① ----- ----- -----. ----- 1. · 2. (현행과 같음) 3. ----- <u>경로대상자</u> ----- ----- 4. (현행과 같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생 략)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0. 「특수입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3. (현행 제5호와 같음)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덕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③ ~ ⑤ (생 략)

② -----
----- 제13호까지 -----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공체육시설 사용료의 현실화를 통하여 구의 재정적 부담 경감과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훈관계 등 법령에서 정한 공공 시설이용료 감면대상자를 누락 없이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함(제10조제1항).
-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조항 중 보훈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감면 대상자를 누락 없이 현실에 맞게 개정함(제11조제1항 및 제2항).
- 시설사용료 인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별표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6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상인조직”이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에서 상시적으로 직접 사업을 하는 상인들로 구성된 법인·단체등을 말한다.
3.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인의 책무)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은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① 구청장은 직권으로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 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서를 발

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제5조제1항에 따른 상인조직의 대표자가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

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1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2. 해당 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동의를 얻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의 동의
3. 해당 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
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상인회원 명부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을 것

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상인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2. 제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내용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경제복지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
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
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경제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

1. 명 칭:
2. 대표자성명:
3. 소재지:
4. 상점가면적:

「대전광역시 대덕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었음을 확인합
니다.

년 월 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 120g/㎡]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과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정함(제1조 및 제2조).
- 구청장과 상인의 책무에 대해 정함(제3조 및 제4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방법에 대해 정함(제5조).
-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방법과 요건에 대해 정함(제6조 및 제7조).
-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취소 사유에 대해 정함(제8조).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 수당에 대해 정함(제1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
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
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7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복구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꾀
하도록 하는데”를 “복구비 지원에 관하여”로 한다.

제2조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
정」 제3조제4호에 해당되는 지수를 말한다.

제4조 중 “농업인에 한하여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을 “자에 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제3항”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인 중”을 “자 중”으로 하고, 같은 조 제1
호를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농업인은”을 “자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본문 중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피해 농지의 경계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 “당해 농업인에게”를 “피해발생 신고인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이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영농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한다.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피해 농지의 경계부분에 대한 복구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구청장은 지원금이 결정되면 그 결과를 당해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결정통지) ----- ----- 피해발생 신고인에게 ----- ----

[별표]

재난지수별 복구비 지원금 기준표

재 난 지 수	복구비지원금(원)	비 고
200이상 ~ 300미만	300,000	재난지수 300미만 복구비 지원금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함
100이상 ~ 200미만	200,000	
50이상 ~ 100미만	100,000	

※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과 관련 재난 지수 300이상에 대해 국고(국·시비) 복구비지원금이 없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액을 조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농업재해 발생에 따른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농업경영 안정화에 기여하고, 복구비 지원사항 보완 및 관련 규정 명칭 변경에 따라 이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조문내용을 정비함(제1조, 제2조, 제4조부터 제6조까지).
- 관련규정 명칭을 정비함(제2조 및 제7조).
- 복구비 지원 관련 내용을 추가 신설함(제7조제3항).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 기술진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8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덕구의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 및 구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과학기술 인재양성, 과학문화 확산 및 혁신 과학기술 육성 등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과학기술문화 확산) ① 구청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관심 향상과 과학의 대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주민의 과학기술 지식 함양을 위한 강좌 등 운영
2. 청소년의 과학적 사고력·창의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3. 과학기술 경진대회 및 과학 축제·행사

4. 청년, 여성, 은퇴과학자 지원 및 과학기술 단체 육성

5. 과학기술 체험시설 조성

6. 그 밖에 과학기술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 대학, 과학기술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 및 협력) ① 구청장은 대덕연구개발특구 입주기관과 교류 활성화 및 협력관계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과학기술 인프라 확충 등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대덕연구개발특구 과학기술 기관·단체와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청장은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정책방향과 전략수립에 관한 사항
2. 주민의 과학기술 이해증진 및 과학 대중화에 관한 사항
3.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
4. 기업·대학·연구기관 등의 과학기술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과학기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전

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에너지과학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대덕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
3. 과학기술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경력이 있는 자
4.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 또는 관계자
5. 그 외 과학기술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과학기술분야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대전광역시 대덕구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과학기술 기반의 혁신성장을 위해 과학기술의 체계적 육성방안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과학기술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대덕연구개발특구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과학기술진흥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 과학기술 분야 공적에 대한 포상 근거를 정함(제11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89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을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 ----- ----- -----
제3조(허가기준 등) 법 제5조제4항 및 제6항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허가기준 등) ----- ----- 제6조제3항----- ----- ----- -----
1. 2. (생 략)	1. 2.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2항이 신설되어 같은 법 제6조제2항이 제6조제3항으로 이동함에 따라 액화석유 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를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대전광역시 대덕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내용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같은 조례 제3조(허가기준 등)내용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개정함(제1조 및 제3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0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
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지원 가구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
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
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
7.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
8.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하여 대덕구자원봉사센터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주민의 건강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2. 주요내용

-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주거환경개선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1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을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으로, “사용검사 후”를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후”로 한다.
제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옹벽·담장·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안에서 「주택법」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및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이하 “공동주택”이라 한다)으로서 <u>사용검사 후 15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u></p> <p>② (생략)</p>	<p>제3조(적용 범위 등) ① ----- ----- ----- 「<u>공동주택관리법</u>」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 ----- <u>사용검사</u> <u>또는 사용승인 후</u>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조(지원대상)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p> <p>1. ~ 8. (생략)</p> <p><u><신 설></u></p> <p>9. (생략)</p>	<p>제4조(지원대상) ----- ----- ----- -----.</p> <p>1. ~ 8. (현행과 같음)</p> <p>9. <u>옹벽·담장·축대 및 이와 유사한 시설의 유지 보수</u></p> <p>10. (현행 제9호와 같음)</p>
<p>제5조(지원절차) ① 관리비용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공동시설지원신청서를 관할동장에게 제출하고, 관할동</p>	<p>제5조(지원절차) ① ----- ----- ----- ----- -----</p>

장은 가능한 해당 지역의 구의
원과 협의를 거친 후 구청장에
게 일괄 제출한다. <단서 신
설>

② ~ ④ (생략)

다만, 관리주
체가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대표자로 선정된 사람이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서
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동주택 노후공동시설물 보수지원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공동주택관리법」 대상의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확대하고자, 적용
범위·지원대상 및 지원절차 등 관련 조항을 일부개정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지원대상의 적용범위를 모든 공동주택으로 확대 적용함(제3조).
- 지원대상시설에 안전부분을 강화함(제4조).
- 지원대상 적용범위 변경에 따른 지원절차를 변경함(제5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
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물 및 게시시설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마련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대전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4. 광고물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개발사업
7. 광고물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사업
8. 그 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여유자금을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합재정안

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도시국장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과 건축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위원

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안

2. 기금결산보고서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경관팀장이 된다.

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 계획) 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 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건축과장

2. 기금출납원: 도시경관팀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결산) 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에 의거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을 정함(제1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재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2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3조).
-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4조).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부터 제9조까지).
-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0조).
-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11조 및 제12조).

대전광역시 대덕구의회에서 의결된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
서점과의 협력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49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역서점과의 협력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과의 협력을 통해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독서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에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의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노력한다.

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계획) 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대한 계획(이하 “협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협력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 방안
2.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구청장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개최하는 각종 공연, 전시, 토론회, 작가와의 만남 등 생활문화공간 활성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정이유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운영 안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역서점과의 협력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5조).
-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6조).
- 지역서점의 홍보와 포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제7조 및 제8조)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03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에 제20조의2 및 제21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독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종전의 제1항) 중 “금품등의 수수”를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로 한다.

제29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신고자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요구자	성명	직위(직급)
	소속	
요구받은 사항		

부당한 요구로 판단한 이유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제20조의2(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① 감독·감사·조사·평가를 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감독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은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출장·행사·연수 등과 관련하여 감독·감사·조사·평가를 받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피감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법령에 근거가 없거나 예산의 목적·용도에 부합하지 않는 금품등의 제공 요구 2.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상적인 관행을 벗어난 예우·의전의 요구 <p>② 제1항에 따른 부당한 요구를 받은 피감기관 소속 공직자는 그 이행을 거부해야 하며, 거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같은 요구를 다시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별</p>

<신 설>

지 제11호의2 서식에 따라 피감기관의 행동강령책임관(피감기관이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인 경우에는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요구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감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제2항 후단에 따른 보고를 받은 피감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감독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그 사실을 통지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해당 요구를 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1조의2(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 인가·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그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그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

2. 직무관련공무원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

3.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용역·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4.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를 부당하게 전가하거나 그 업무에 관한 비용·인력을 부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① (생략)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① 공무원은 알선·청탁, 금품등의 수수,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경조사의 통지 등에 대하여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제29조(교육) ①·② (생략)

<신설>

담하도록 부당하게 전가하는 행위

5.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공무원,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제24조(경조사의 통지 제한) (현행 제1항과 같음)

제25조(위반여부에 대한 상담) --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금품등의 수수,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

제29조(교육)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신 설>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

4.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공직자의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교육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공무원 행동강령」 및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우리구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0조의2).
-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을 신설함(제21조의2).
- 행동강령 위반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하는 행위유형을 추가함(제25조제1항).
- 행동강령 교육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제29조제3항 및 제4항).
- 감독기관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서식을 마련함(별지 제11호의2서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04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 전단 중 “보호대상자”를 “지원대상자”로 한다.

제14조제6항 전단 중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
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한다.

제15조의 제목“(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및 신체조건)”을
“(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을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로, “표에
규정된”을 “표에서 규정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을 다음과 같
이 한다.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

를 준용한다.

제15조제2항 후단 중 “경우“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이를“자격증 소
지여부””를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하
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4조의2제2항제2호 중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
연수 산입)”를 “지도사”로 한다.

제25조의2의 제목“(자격증등의 가산점)”을“(가산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3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가산점은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5의3과 같
다.

③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따
라 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 중 “근무성적평정점” 및 “평정
점수”는 각각 “실적 가산점”으로 본다.

별표 4의2를 삭제하고, 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3,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1, 별표 15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5의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연구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등·전직시험응시자격구분표
(제14조제5항, 제6항 및 제17조제1항 관련)

직렬	계급 직류	연 구 관 · 연 구 사
학예연구	학예일반	국어국문학, 고고학, 역사학, 역사교육학, 박물관학, 문화재관리학, 문화유적학, 인류학, 민속학, 보존과학, 문헌정보학, 서지학,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건축학(건축사를 포함한다), 연극학, 공연예술학, 무용학, 생물학, 지질학, 음악, 지리학, 조경학, 가정학(의생활·식생활·주생활분야 등 생활과학 분야를 포함한다)을 전공한 사람
	미 술	미술학(미술사를 포함한다), 미술관학, 예술학 또는 미학을 전공한 사람
	국 악	국악 또는 한국무용을 전공한 사람
	국 어	국어국문학, 국어정책학 또는 언어학을 전공한 사람
편사연구	편 사	역사학을 전공한 사람
기록연구	기록관리	기록관리학, 역사학, 문헌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공업연구	기 계	정밀기계공학, 기계공학, 기계설계학, 제어계측공학, 항공우주공학 또는 조선공학을 전공한 사람
	전 기 전 자	전기공학, 전자공학, 통신공학 또는 컴퓨터공학을 전공한 사람
	섬 유	섬유공학을 전공한 사람
	화 공 화 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화학, 농화학, 재료공학, 고분자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식품공학, 입산가공학, 제지공학, 생물학, 생물공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단백질공학, 생물정보학 또는 환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물 리	물리학, 응용물리학 또는 원자력공학을 전공한 사람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농업연구	작물	농학, 자원식물학, 농화학, 환경학, 원예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실험통계학, 기상학, 수자원학, 약학, 한약학, 환경공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천연물화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농학, 자원식물학, 식물학, 원예학, 농화학, 환경학, 환경공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생화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수자원학 또는 관계배수학을 전공한 사람	
	작물보호	농화학, 농생물학, 환경학, 환경공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미생물학, 작물보호학, 식물병리학, 곤충학, 농학, 원예학 또는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농업경영학, 농경제학, 축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자원경제학 또는 통계학을 전공한 사람	
	산업곤충	잠사학, 천연섬유학, 농생물학, 미생물학, 농공학, 곤충학, 생물학, 천연고분자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화학, 농화학, 유전공학 또는 약학을 전공한 사람	
		원예	원예학, 조경학, 농학, 농화학, 환경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식물학, 분자생물학, 농생물학 또는 식품가공학을 전공한 사람
	생명유전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미생물학, 식물학, 생물학, 물리학, 화학, 화학공학, 농학, 원예학, 농화학, 생물공학, 천연물화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농촌생활	식품학, 식품가공학, 생화학, 피복과학, 조경학, 농촌계획학, 산업공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사회학, 문화인류학, 경제학, 농촌관광학, 산업보건학, 또는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
	축산	축산학, 축산경영학, 수의학, 식품가공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생화학, 환경공학 또는 유전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공	농공학, 건축공학, 기계공학, 재료공학, 토목공학, 농업기계공학, 전기공학, 식품가공학, 환경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농식품개발	식품학, 식품영양학, 식품가공학, 식품공학, 식품위생학, 식품화학, 식품생물공학, 식품효소공학, 식품미생물학, 생화학, 농화학, 단백질공학, 식품저장학, 천연물화학, 육가공학, 유가공학 또는 조리과학을 전공한 사람		
	농지연구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농화학, 화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생물화학공학, 생물공학, 농생물학, 분자생물학, 미생물학, 유전공학, 조경학, 생물학, 임업경제학, 임업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원예학 또는 식물자원학을 전공한 사람
조경			

직렬	계급		연구관·연구사	
	직렬	직류		
수의연구	수의	축산학, 수의학, 동물학, 분자생물학, 생화학, 의학, 한의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해양학, 해양공학, 환경공학, 해양오염학, 화학, 지구과학, 지구물리학, 지리정보학, 해양원격탐사학, 해양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자원	수산자원학, 어장학, 해양생산관리학, 해양생물학, 생물통계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양식	수산양식학, 수산자원학, 어병학, 해양오염학, 해양생물학, 유전공학, 분자생물학, 단백질공학 또는 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공학	해양학, 어구어법학, 어구공학, 어업기기학, 해양생물학, 수산토목학, 해양공학, 조선공학 또는 전자공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가공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산가공학, 수산화학, 생화학, 생명공학 또는 미생물학을 전공한 사람	
		수산경제	수산경제학, 수산경영학, 경제학, 경영학 또는 자원경제학을 전공한 사람	
보건연구	의약	의학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수의학, 미생물학, 생리학 또는 생화학을 전공한 사람	
		약학	보건학, 약학, 한약학, 생물학, 미생물학 또는 화학을 전공한 사람	
		공중보건	보건학, 의학, 한의학, 치의학, 약학, 한약학, 간호학, 화학, 생물학, 식품학, 식품가공학, 수의학, 축산학, 낙농학, 동물학, 위생공학, 유전공학 또는 생명정보학을 전공한 사람	
환경연구	환경	환경공학, 위생공학, 화학, 화학공학, 농화학, 환경화학, 도시계획학, 약학, 토목공학, 식품공학, 물리학, 천문학, 기상학, 지질학, 지리정보학, 산림자원학, 생물학 또는 해양학을 전공한 사람		
		시설연구	토목	토목공학, 건설도시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건설	건축공학, 도시공학, 환경공학, 산업공학 또는 조경공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	안전관리	안전공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경영학, 보험학, 통계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향해학, 경찰학, 정책학, 화학공학, 공업화학, 소방학, 소방방재학, 소방행정학 또는 위기관리학을 전공한 사람
방재안전연구	재난관리	방재안전	방재안전학, 도시방재학, 토목공학, 보건학, 보건환경안전학, 기상학, 도시공학, 지형공간정보학, 건축공학, 환경공학, 자원공학, 지질학, 미생물학, 수의학, 원자력공학, 해양공학, 항공우주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전자공학, 컴퓨터공학, 정보통신공학 또는 산업공학을 전공한 사람	

비고 : 위 표에서 “전공한 사람”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전문대학을 제외한다)에서 해당 학 및 관련 계통의 학을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별표 4]

특수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중 구분표(제15조관련)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데이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2급 정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1·2급 정사서, 준사서
속 기	속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수 의	수 의	수의사	수의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조산사, 간호사
해양수산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항해사1급 내지 6급 기관사1급 내지 6급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2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4급	기술사(조선) 기사(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항해사1급 내지 6급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2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기관사1급 내지 4급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사(일반기계)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관사1급 내지 6급

직렬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항 공	일반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운항관리사,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산업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시 설	지 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기술사(지적) 기사(지적) 산업기사(지적)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의료기술
위 생	위 생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안경사
	사 역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운 전	운 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비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특수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신설 2006.2.15.>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4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표 4의2] <삭제>

[별표 5의2]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1.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기술·기능분야 자격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산	전 산	기술사 :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 :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 :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데이터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기술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터운전, 몰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포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금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조선 기사: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기능사: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 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기능사: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전 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반도체설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 자 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금 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 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생사기사 2급(1999. 3. 27. 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사: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자 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기능사: 시추, 광산보안, 환경, 화학취급
농 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식물검역	기 술 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 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입업종묘,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 술 사 : 축산, 식품 기 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생명유전	기 술 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 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녹 지	조 경	기 술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자연환경관리 기 사 : 조경, 시설원예,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산림, 조경
	산림자원	기 술 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조경, 종자,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입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입업종묘, 입산가공
	산림보호	기 술 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 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 : 산림, 입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 술 사 : 산림 기 사 : 산림, 입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입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입산가공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해양, 수질관리 기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잠수
	일반수산	기 술 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수산양식, 식품가공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어 로	기 술 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산업기사 :
	일반선박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조선
	선박항해	기 술 사 : 조선 기 사 : 조선, 항로표지 산업기사 : 조선, 항로표지
	선박기관	기 술 사 : 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기 사 : 일반기계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해양교통시 설	기술사: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전기, 전자기기 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 술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 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식품가공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 술 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 술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 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환 경	일반환경	기 술 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 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조경, 산림, 환경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수 질	<p>기술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대 기	<p>기술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p> <p>기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폐 기 물	<p>기술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p> <p>산업기사 :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p> <p>기능사 : 조경, 산림, 환경</p>
항 공	일반항공	<p>기술사 : 항공기관, 항공기계</p> <p>기사 : 항공</p> <p>산업기사 : 항공</p>
	정 비	
시 설	도시계획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p> <p>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p>
	일반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농업토목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p>
	건 축	<p>기술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p> <p>기능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온수온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재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p>

직 렬	직 류	대 상 자 격 증
	지 적	<p>기술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p> <p>기능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p>
		측 지
	교통시설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도시교통설계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p>
	디자인	<p>기술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p> <p>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p> <p>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p> <p>기능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p>
방재안전	방재안전	<p>기술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p> <p>기능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p> <p>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p> <p>기능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p>
방송통신	통신사	<p>기술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p> <p>기능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p> <p>산업기사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통신기술	<p>기사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전송기술	
	전자통신기술	<p>기능사 : 전자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운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p>
조리	조리	<p>기능장 : 조리</p> <p>산업기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p>기능사 : 조리(한식, 중식, 양식, 일식, 복어)</p>
위생	사역	<p>기능사 : 환경기능사</p>
시설관리	시설관리	<p>기능장 : 전기</p> <p>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p> <p>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p>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

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입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입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정	일반행정 법무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재경 국제통상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무	지방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산	전산 데이터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 제작전문가
사서	사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공업	일반전기 일반기계			무대조명전문인1급 무대기계전문인1급 무대음향전문인1급
	원자력	원자로조종 감독자(5),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6),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특수), 방사선취급 감독자(5)	원자로조종 감독자,원자로조종 사(3), 핵연료물질 취급감독자, 핵연료물질 취급자(3),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3), 방사선취급 감독자	원자로조종사, 핵연료물질 취급자,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농업	축산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수의	수의	수의사(7)	수의사(3)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수산	수산질병관리사(7) 수의사(7)	수산질병관리사(3) 수의사(3)	수산질병관리사 수의사		
	일반선박	1급 항해사(3) 1급 기관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해양수산	선박항해	1급 항해사(3)	1급 항해사 2급 항해사(2)	2급 항해사 3급 항해사(2)	3급 항해사 4급 항해사	5급 항해사 6급 항해사
	선박기관	1급 기관사(3)	1급 기관사 2급 기관사(2)	2급 기관사 3급 기관사(2)	3급 기관사 4급 기관사	5급 기관사 6급 기관사
보건	보건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약사(7) 한약사(7) 조산사(12) 간호사(12) 보건교육사1급(7)	수의사(3) 약사(3) 한약사(3) 조산사(6) 간호사(6) 보건교육사1급(3)	수의사 약사 한약사 조산사(3) 간호사(3) 보건교육사1급	조산사 간호사 보건교육사2급	보건교육사3급
	방역	의사(2) 한의사(2) 수의사(7) 약사(7) 간호사(12)	수의사(3) 약사(3) 간호사(6)	수의사 약사 간호사(3)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위생사(12) 영양사(12)	위생사(8) 영양사(8)	위생사(5) 영양사(5)	위생사(2) 영양사(2)	위생사 영양사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농업연구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화학, 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1급, 사회복지사 1급(7)	기사(섬유, 의류, 조정,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평생교육사 2급, 사회복지사 1급, 소비자전문상담사 1급(3), 영양사(5), 위생사(5)	
	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농공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용접, 급행,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정,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건설기계,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정,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계설계)	
	농식품개발	기술사(식품, 축산, 농화학)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영양사(5), 위생사(5)	
녹지연구	임업	기술사(조정,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정,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토양환경)	
	조경			
수의연구	수의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기술사(해양,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질환경)
		수산자원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양식	기술사(수산양식, 수질관리)	기사(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공학	기술사(해양, 어로)	기사(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가공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수산경제	기술사(수산제조, 식품)	기사(수산제조,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보건연구	의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수의사(7)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학	약사(7), 한의사(2), 한약사(7)	약사, 한의사, 한약사	
	중증보건	기술사(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사(2), 한의사(2), 치과의사(2) 약사(7), 한약사(7), 수의사(7), 전문간호사(7),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5)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간호사(3), 조산사(3),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임상병리사(5), 보건의료정보관리사(5), 방사선사(5), 물리치료사(5), 치과기공사(5), 치과위생사(5), 작업치료사(5), 위생사(5), 영양사(5)	

직렬	계급	연구관	연구사
환경연구	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의사(2), 약사(7), 수의사(7), 환경측정분석사(7)	의사, 약사, 수의사, 위생사(5),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기사(방재)
	재난관리		기사(방재)

비 고 : 1. 직렬별로 연구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연구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2. 지도직 공무원

직렬	계급	지 도 관	지 도 사
농촌지도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임 업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잠 업	기술사(생사)	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 생사기사 2급(6) ※1999.3.27이전 취득
	원 예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수의사(7)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수의사
	가축위생	기술사(축산) 수의사(7)	기사(축산) 수의사
	농촌사회	평생교육사 1급	청소년지도사(5), 평생교육사2급
	농업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승강기)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기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농촌생활	기술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 1급	기사(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평생교육사2급, 위생사(5), 영양사(5)
어촌지도	어 촌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수산질병관리사(7)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수산질병관리사

비 고 : 1. 직류별로 지도관에 해당하는 자격증은 지도사에 해당하는 자격증으로 본다.

- 경력경쟁임용의 경우 기사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3년, 기타 자격증 소지자는 해당자격증 소지 후 ()안의 기간(년)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경력경쟁임용 대상 및 전직시험 면제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 구분표(제17조제2항 관련)

1.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사회복지	사회복지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기술사(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정보관리)	기사(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보안)	산업기사(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테 이 터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숙 기	숙 기	한글속기 1급	한글속기 1·2급	한글속기 1·2·3급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작,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영사, 소방설비:기계분야), 사 진기능사
		농업기계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기계운전	기술사(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판금제작, 배관)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판금제작, 배관, 산업안전, 교통)
	일반전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전 자	전 자		기술사(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전자기기) 기사(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전자제어, 전자응용, 품질경영, 반도체설계)	산업기사(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원 자 력		기술사(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원자력, 에너지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계강)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 유		기술사(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생사기사2급(19 99. 3. 27 이전 취득)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일반화공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약류제조, 화공, 화학분석,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공 업 가 스		기술사(화공안전)	기능장(위험물, 가스) 기사(화공, 산업안전, 가스)	산업기사(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자 원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및지반, 광해방지)	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조사)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농 업	식물검역		기술사(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축 산		기술사(축산, 식품) 수의사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종자, 식품)
	일반농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녹 지	산림자원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업기사(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산림보호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기능장(산림) 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업기사(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이용		기술사(산림)	기사(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산림 임산가공)	
	조 경		기술사(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수 의	수 의	수의사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식품, 수질환경)	산업기사(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일반수산				
		어 로				
		해양교통 시설				
		일반선박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항해사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조선)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조선)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선박항해	선박항해		기술사(조선) 1·2급 항해사	기사(조선,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산업기사(조선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선박기관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비, 조선) 1·2급 기관사	기사(일반기계)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컴퓨터응용가공) 5·6급 기관사	
	보 건 보 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한의사, 치과 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전문간호사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위생사, 영양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임상심리사1급, 응급구조사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2급, 응급구조사2급	
	보 건 방 역		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전문간호사	간호사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기사(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위 생 위 생	위 생 사		위생사	영양사	위생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사 역	사 역		영양사	영양사	영양사	
	환경기능사		환경기능사	환경기능사	환경기능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응급구조사2급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전문간호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방사선취급감독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사, 조산사, 응급구조사1급, 의지·보조기사	
의 무	일반의무		의사, 한의사		
	치 무		치과의사		
약 무	약 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 호	간 호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	간호조무				간호조무사
보건진료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의사, 약사, 수의사	기사(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술사(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사(농화학,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산업기사(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술사(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및지반, 기상예보)	기사(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상, 응용지질)	산업기사(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술사(화공, 산림, 상하수도,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화공,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위생사 2급, 위생시험사 2급	산업기사(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항공공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계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자가용조종사	
조 종	운송용조종사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자가용조종사		
정 비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체)	기사(항공) 항공정비사, 항공공장정비사, 항공기관사	산업기사(항공)		
시 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지질및지반)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응용지질, 방재)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정, 지적, 교통)	

직렬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직류				
	일반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수도토목				
	농업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지질및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 축	기술사(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체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지 적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측 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교 통 시 설	기술사(토지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지질및지반) 교통, 지질및지반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응용지질)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도시교통설 계			
디 자 인	기술사(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정)		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산업기사(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정)	
		방송통신	통 신 사	기술사(전자응용, 정보통신)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기사(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계산기, 무선설비, 정보처리)
	통신기술				
	전자통신기술				
조 리	조 리			조리기능장	조리산업기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조리기능사(한식, 중식, 일식, 양식, 복어)

직렬	계급 직류	계급		
		5급이상	6·7급	8·9급
방재안전	방재안전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정)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운전	운전			제1종운전면허(대형) 제1종운전면허(보통) 제2종운전면허(보통)

- 비 고 : 1. 직류별로 상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은 하위계급의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자격증으로 본다.
2. 운전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표 7의 운전직류 자격증 또는 필요한 자격증을 따로 정할 수 있다.
3.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7의3]

분야별 자격증 가산 비율표(제13조의3 관련)

1.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보건·의료기술·식품위생직렬을 말한다)의 직급별 자격증 가산비율

구 분	6·7급		8·9급	
	가산대상 자격증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변호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관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 사회조사분석사1급, 임상심리사1급,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직업상담사2급, 사회조사분석사2급, 임상심리사2급
가산비율	5%	3%	5%	3%

비고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증중 기술·기능 분야의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3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에서 정한 비율을 적용한다.

2. 기술직군(연구·지도직 포함)의 가산비율

구 분	6·7급, 연구사, 지도사		8·9급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가산비율	5%	3%	5%	3%
비고	1. 국가기술자격법이 아닌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자격증에 대한 가산비율은 별표 7의4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란에서 정한 가산비율을 적용한다. 2. 해당 자격증이 임상심리사 1급 또는 임상심리사 2급인 경우에는 5%를 적용한다.			

[별표 7의4]

신규임용시험 가산대상 자격증(제13조의3관련)

가. 6급이하 일반직공무원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행 정	일반행정	-	번호사 번호리사
	법무행정		
	재 경	-	번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동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	번호사 번호노무사
	문화홍보	-	번호사
	감 사	-	번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기업행정			번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세 무 사
세 무	지방세	-	번호사 공인회계사 세 무 사
교육행정	교육행정		번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	번호사
공 업	일반기계	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소방 기능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농업기계		

공 업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소방설비(기계)		
	기능사 : 컴퓨터응용선반, 연삭, 컴퓨터응용밀링, 기계가공조립,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정비, 농기계운전, 배관, 동력기계정비, 영사, 승강기		
	기계운전	기술사 : 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교통 기능장 : 기계가공,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판금제관, 배관 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산업안전, 교통	산업기사자격 증가산비율: 철 도교통안전관리자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철도운송,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산업안전, 교통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산응용기계제도, 공유압, 철도차량정비,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건설기계정비, 기중기운전, 굴삭기운전, 불도저운전, 천장크레인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지게차운전, 양화장치운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용접, 특수용접, 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기계정비, 농기계운전		
	조선	기술사 : 조선 기사 : 일반기계, 조선 산업기사 : 조선, 컴퓨터응용가공 기능사 : 전산응용조선제도, 선체건조, 동력기계정비	
일반전기	기술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소방전기 기능장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승강기,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전기분야) 산업기사 : 전기, 철도전기신호, 승강기 기능사 :		

공업	전자	기술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능장 : 전자기기 기사 : 매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기능사 : 생산자동화, 전자기기, 전자계산기, 전자카드	
	원자력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기사 : 에너지관리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원자 로조종감독자, 핵 연료물질취급감독 자, 방사성동 위원소취급자(특 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원 자로조종사, 핵연 료물질취급자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산업기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사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원형, 압연, 제선, 제강, 축로,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기능사 : 염색 생사기사 2급(1999.3.27이전 취득)	
	일반화학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화학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기사 : 화학분석, 위험물, 가스 기능사 :	
	자원	기술사 :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 :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기능사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환경	

농업	일반농업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 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버섯종균, 식품가공, 유기농업, 화훼장식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농산물품질관리 사
	식물검역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산림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산림,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산림, 유기농업	
	축산	기술사 : 축산, 식품 기사 : 축산, 식품 산업기사 : 축산,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기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수의사,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가축인공수정사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시설원예, 식품, 축산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 종자, 식품, 축산, 식물보호, 유기농업 기능사 : 종자, 원예, 식품가공, 축산, 유기농업	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 방사성 동위원소취급자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녹지	산림자원 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조경, 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 기능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임산가공 산림보호 기술사 : 종자, 산림, 농화학 기사 :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토양환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기능사 : 산림 산림이용 기술사 : 산림 기사 : 산림, 임산가공 산업기사 : 산림, 임산가공 기능사 : 산림, 임산가공, 조경 기술사 : 조경, 자연환경관리, 산림, 시설원예 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시설원예, 식물보호 산업기사 : 조경, 자연생태복원, 산림, 식물보호 기능사 : 조경, 산림	

해양수산	일반해양	기술사 : 해양,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질환경, 자연생태복원, 잡수 기능사 : 잡수	
	일반수산	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 기능사 : 수산양식, 식품가공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수산물품질관리사
	어 로	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 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질환경,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	
	해양교통 시설	기술사 :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정보통신,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기능장 : 전기, 전자기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해양공학, 항로표지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전자, 무선설비,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항로표지 기능사 : 전기, 전자기기, 항로표지	
보 건	보 건	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능사 : 식품가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 약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 급감독자, 응급구 조사 1급, 보건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방 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 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 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 사2급, 보건교육 사2급 기능사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보건교육사3급

보 건	방 역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수의사, 약사, 응급 구조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임 상병리사, 보건의 료정보관리사, 간 호사, 위생사, 응급 구조사 2급
식품위생	식품위생	기술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식품 기사 : 축산, 수산제조, 품질경영, 포장, 식품 산업기사 : 축산, 품질경영, 포장, 식품 기능사 : 축산, 식육처리, 식품가공	산업기사자격증 가산비용적용: 영 양사, 위생사
의료기술	의료기술	기술사 : 방사선관리 기사 : 의공 산업기사 : 의공 임상심리사1급, 임상심리사2급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한약사,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 자, 응급구조사1 급
환 경	일반환경	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 기사 : 화공, 조정, 산림, 식물보호, 토양환경,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기상, 광해방지 산업기사 : 조정,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기능사 : 조정,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3.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 (대기·수질)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 위생사

환 경	수 질	기 술 사 :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해양, 수산양식, 수질관리, 광해방지 기 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수산양식, 수질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산림, 해양조사, 수산양식, 수질환경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수질환경분야로 한정한다) 장수시설운영관리사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경수시설운영관리사2급 기능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장수시설운영관리사3급
		대 기 기 술 사 : 산림, 대기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대기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기상, 기상감정, 산림 산업기사 : 산림, 대기환경, 소음진동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환경측정분석사(대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폐 기 물 기 술 사 : 화공, 상하수도, 산림, 농화학,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 능 장 : 산림 기 사 : 화공, 농화학, 원자력,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산림 산업기사 : 화공, 산림, 에너지관리, 산업위생관리, 폐기물처리 기 능 사 : 조경, 산림, 환경 유독물취급기능사(1999. 3. 27이전 취득)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위생사
시 설	도시계획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공,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교통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기 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교통, 방재 산업기사 :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일반시공, 건축, 조경, 지적, 교통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조경, 지적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일반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시 설	건 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산업기사 :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방수,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 능 사 : 전산응용건축제도, 타일, 미장, 조적, 운수운돌, 유리시공, 비계, 건축목공, 거푸집, 금속계창호, 건축도장, 철근, 방수, 실내건축, 플라스틱창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측 지 기 술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산업기사 :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 능 사 : 측량, 지도제작, 도화, 항공사진, 지적	
		교통시설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건설안전, 교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석공, 전산응용토목제도, 측량, 조경, 지적	
	도시교통설 계 기 술 사 : 제품디자인, 도시계획, 조경 기 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도시계획, 조경 산업기사 :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제품디자인, 건축, 실내건축, 조경 기 능 사 : 실내건축, 조경, 컴퓨터그래픽스응용, 웹디자인	기사자격증 가산비율 적용 : 건축사	
	방재안전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건축설비, 건축, 방재 산업기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안전, 교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기 능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전산응용토목제도, 전산응용건축제도		
	방송통신 통 신 사 : 전자응용, 정보통신 기 능 장 : 전자기기, 통신설비 통 신 기 술 : 전자,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 송 기 술 : 전자, 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 자 통 신 기 술 : 전자기기, 통신기기, 통신선로, 정보기기응용,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처리 전화회환기능사(1997. 6. 1이전 취득)		

시설관리	시설관리	기능장 : 전기 기사 : 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기계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경 기능사 : 전기, 기계정비, 조경	
------	------	--	--

비 고 : 1.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2. 방호 직렬의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가산대상 자격증의 종류 및 등급을 임용권자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함

나. 연구·지도직

직 렬	직 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공업연구	기 계	기 술 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 능 장 : 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관급제관, 배관 기 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기계설계,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농업기계,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관급제관, 농업기계, 배관, 산업안전,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농촌지도	농업기계	
공업연구	전 기	기 술 사 :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기 기 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산업기사 : 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전 자	기 술 사 :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품질관리 기 능 장 : 전자기기 기 사 : 메카트로닉스,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품질경영 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품질경영	

공업연구	금속	기술사 :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능장 : 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기사 : 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섬유	기술사 : 섬유, 의류, 품질관리	
		기사 : 섬유, 의류, 산업안전, 품질경영	
		산업기사 : 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산업안전, 품질경영	
화공	기술사 : 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능장 : 위험물, 가스		
화학	기사 : 화약류제조, 화공,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화학분석		
	산업기사 : 화약류제조,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산업경영	기술사 : 제품디자인,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산업기사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컬러리스트,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포장		
물리	기술사 :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사 : 전자, 원자력, 에너지관리, 광학		
	산업기사 : 정밀측정, 전자, 에너지관리		
공업연구	농식품개발	기술사 : 식품, 농화학, 축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영양사, 위생사
		기사 :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작물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농촌지도	농업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공업연구	원예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조경,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농촌지도	원예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조경, 식품, 유기농업	
공업연구	농업환경	기술사 :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조경, 산림,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기사 :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기상, 유기농업	
		산업기사 :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조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유기농업	
	산업공중	기사 : 바이오화학제품제조	
농촌지도	잠업	생사기사 2급(1999. 3. 27이전 취득)	
공업연구	작물보호	기술사 : 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기사 : 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토양환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유기농업, 화훼장식	
		산업기사 : 종자,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식품, 유기농업	
	생명유전	기술사 : 종자, 농화학, 식품	기사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 방 사성동위원소취 급자(일반), 방 사선취급감독자
기사 : 종자,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종자, 식품 산업기사 :			
	농촌생활	기술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농어업토목, 자연환경관리, 인간공학	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 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사회조사 분석사 1급
농촌지도	농촌생활	기사 :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토목, 자연생태복원, 인간공학,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 적용: 평 생교육사 2급, 사회 조사분석사 2급, 영 양사, 위생사
농촌지도	농업경영	기술사 : 섬유, 패션디자인,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농촌지도	농촌사회		기사 자격증 가산 비용적용: 평생교 육사 1급 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용적용 : 정 소년지도사 1급, 평 생교육사 2급

농업연구	농 공	<p>기술사 :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농어업토목,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소방, 가스, 품질관리, 인간공학, 소음진동, 금속재료, 토질 및 기초,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 :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인간공학,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산업기사 : 생산자동화,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레도장비정비, 정밀측정,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토목,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소방설비, 가스, 품질경영, 소음진동, 에너지관리, 기계설계, 자동차정비, 건설재료시험,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p>	<p>기사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업연구	축 산	<p>기술사 : 축산, 식품</p> <p>기사 : 축산, 식품</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수의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p>
농촌지도	축 산	<p>산업기사 : 축산, 식품</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가축인공수정사</p>
녹지연구	임 업	<p>기술사 : 조경, 종자, 산림, 농화학</p>	
	조 경	<p>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p>	
농촌지도	임 업	<p>산업기사 : 조경, 종자, 산림, 식물보호, 임산가공</p>	
수의연구	수 의	<p>기술사 : 축산</p> <p>기사 : 축산</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p>
농촌지도	가축위생	<p>산업기사 : 축산</p>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p>기술사 : 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p>	
	수산자원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수산양식, 어업생산관리,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p>	
어촌지도	어 촌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수산양식, 어로, 수질환경, 식품</p>	

해양수산연구	수산양식	<p>기술사 : 수산양식, 수질관리</p> <p>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수산양식, 수질환경</p>	
	수산공학	<p>기술사 : 해양, 어로, 수질관리</p> <p>기사 :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질환경</p> <p>산업기사 : 해양조사, 어로, 수질환경</p>	
	수산가공	<p>기술사 : 수산제조, 식품</p> <p>기사 : 수산제조, 수산양식,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p> <p>산업기사 : 식품</p>	
보건연구	의 학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p>
	약 학	-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약사, 한의사, 한약사</p>
공중보건	기 술 사	<p>기술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일반), 방사선 취급감독자, 응급구조사 1급</p>
	기 사	<p>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심리사 1급, 임상심리사 2급</p>
	산 업 기 사	<p>산업기사 :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의공</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임상심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간호사, 조산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2급</p>
환경연구	환 경	<p>기술사 : 화공,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광해방지</p> <p>기사 : 화공, 조경, 산림, 식물보호,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기상, 광해방지</p> <p>산업기사 : 조경, 산림, 식물보호, 농림토양평가관리, 해양조사, 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자연생태복원</p>	<p>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사</p> <p>산업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위생사</p>

시설연구	토 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기 사 :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광해방지	
농촌지도	농업토목	기 술 사 :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어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지질 및 지반, 건설안전, 교통	
		기 사 :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응용지질, 건설안전, 교통	
시설연구	건축	기 술 사 : 건축전기설비,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소방	기사 자격증 가산비율적용 : 건축사
		기 능 장 : 건축일반시공, 건축목재시공	
방재안전 연구	안전 관리	기 사 : 방재	
		재난 관리	

비고 :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가산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별표 9]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제14조제5항 관련)

1. 기술직공무원 임용예정직렬과 전공학과 대비표

직 렬	직 류	관 련 학 과
공 업	일반기계	기계, 자동차(자동차정비), 운전, 판금, 용접, 배관, 기관, 인쇄공업, 계량
	원 자 력	원자력, 원자력공학, 원자핵공학
	조 선	조선, 선박기계공학, 조선공학
	일반전기	전기, 전자, 원자, 통신, 물리
	섬 유	섬유, 방직, 제직, 염색, 섬유공학
	일반화학	화학(화학, 공업화학, 농화학) 공학(화학공학, 식품공학, 입산가공학, 제어공학, 요업공학, 원자력공학)
녹 지	금 속	금속(금속공업), 야금, 주물(주물, 모형주조), 판금용접
	자 원	광산, 자원개발, 지질
	산림자원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농)화학, (농)생물학
농 업	산림보호	임업, 임학, (농)생물학
	산림이용	임업, 임학, 입산가공학, (농)화학
	일반농업	농업, 잠업, 연초, 제사, 원예, 특수재배, 농예, 농업경영, 농기계
수 의	축 산	축산(학), 낙농(학), 사료(학), 수의학
환 경	수 의	수의학
해양수산	일반환경	환경관리, 환경공학, 환경학, 화학, 화학공학, 생물학
	일반해양	
	일반수산	수산 및 해양계통의 학과
	일반선박	항해(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통신공학(해양계에 한함), 기관(학)
	선박항해	항해(학)
	선박기관	기관(학), 기관공학, 통신(해양계에 한함)
	어 로	어로학, 항해(어선분야)학, 어업
해양교통시설	해양학, 해양공학, 해양토목, 항해(학), 어업	
시 설	일반토목	토목(토목건설, 목공), 농업토목, 건축(건축설비)
	건축	건축(건축설비)
	지 적 축 지	지적, 해양토목, 토목(토목건설), 토목공학
방송통신	통 신 사	
	통신기술	전자학, 통신학, 전자통신학, 통신설비, 통신전송, 전자공학
	전송기술	통신(무선통신, 무선기술, 전기통신), 통신전자
	전자통신기술	
항 공	일반항공	항공정비, 항공운항학,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항공경영학
	조 종	항공운항학
	정 비	항공정비, 항공기계공학, 항공공학
약 무	약 무	계약학, 약학, 위생계약학
보 건	보 건	위생, 임상병리, 방사선, 물리치료, 치기공, 보건, 의학, 치의학

※ 수의·지적·일반선박·선박항해·선박기관·일반항공·조종·정비·약무·간호 직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별표 4에 규정한 자격증소지자에 한함

2. 지도직공무원

직 렬	관 련 학 과
농 촌 지 도	농업, 농학, 농생물학, 식물보호학, 임업, 임학, 임산가공학, 잠업, 잠사학, 원예(학), 축산(학), 수의학, 낙농(학), 사료(학), 농경제학, 농가정학, 농업교육(농촌지도 전공), 농업기계, 기계공학, 농공학, 농업토목, 토목공학, 농공학, 식품가공, 영양, 식품영양, 농산제조, 농화학, 아동, 가정교육, 가정복지,
어 촌 지 도	수산경영, 증식학, 냉동학, 양식학, 수산가공, 수산, 해양

[별표 11]

연구직·지도직공무원의 기술직렬 전직시 전직시험면제 기준 및
직무내용이 유사한 기술직렬 기준표(제17조제4항 관련)

1. 연구직공무원

연 구 직		기 술 직	
직 렬	직 류	직 렬	직 류
공업연구	기 계	공 업	일 반 기 계
			농 업 기 계
	전 기		기 계 운 전
			일 반 전 기
	전 자		전 자
			금 속
	섬 유		섬 유
	화 공		화 공
화 학	-		
물 리	-		
농업연구	작 물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농 업 환 경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작 물 보 호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식 물 검 역
	농 업 경 영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농 업 경 영
	산 업 곤 충	농 촌 지 도	잠 업
	원 예	농 업	일 반 농 업
		농 촌 지 도	원 예

연구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업연구	생명유전	농업	일반농업
	농촌생활	농업	일반농업
		농촌지도	농촌사회
	축산	농촌생활	축산
		농업	축산
	농공	농촌지도	축산
		공업	농업기계
		시설	농업토목
	농촌지도	농업	농업기계
		농촌지도	농업토목
농지연구	임업	전직류	
수의연구	조경	농촌지도	임업
	수의	수의	수의
해양수산연구	해양환경	환경	수질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자원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수산양식	어촌지도	어촌
	수산공학	해양수산	어로
		어촌지도	어촌
	수산가공	어촌지도	어촌
	수산경제	해양수산	일반수산
어촌지도		어촌	
보건연구	의학	의무	일반의무
			치무
	약학	의무	약무
공중보건	보건	식품위생	보건
			식품위생
환경연구	환경	환경	전직류
시설연구	토목	시설	일반토목
	건축		농업토목
방재안전연구	안전관리	방재안전	건축
	재난관리		방재안전

2. 지도직공무원

지도직		기술직		
직렬	직류	직렬	직류	
농촌지도	농업	농업	일반농업	
			농업연구	작물보호
				작물환경
				농업경영
		원예		
	농업경영	농업연구	농업경영	
	임업	농업연구	농지	전직류
			농지연구	임업
			농지연구	조경
	감업	농업연구	산업곤충	
	원예	농업연구	원예	
	축산	농업연구	축산	
			축산	
	가축위생	수의	수의	
			수의연구	수의
	농촌사회	농업연구	농촌생활	
	농업기계	농업연구	공업	농업기계
			농업연구	농공
농업토목	농업연구	시설	농업토목	
		농업연구	농공	
농촌생활	농업연구	농촌생활		
어촌지도	어촌	해양수산	일반수산	
			해양수산연구	어로
			전직류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 구분표(제25조의2 관련)

1. 5급부터 9급까지

계급 직렬	5 급	6급·7급	8급·9급
행정, 세무, 교육행정, 사회복지,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공인노무사, 경영·기술지도사(지도사자격시험 합격자에 한함)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전 산	기술사(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조직 응용,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산업기사(정보처리, 전자계산기 제어, 정보통신, 사무자동화, 멀티미디어 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	준사서
공 업 계 (기 계)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급형, 산업기계설비, 전기응용,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 응용, 정보통신, 항공기관, 항공기계, 기계안전, 공장관리, 소방, 품질관리, 조선, 소음진동) 운송용조종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케도장비정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설계, 사출급형설계, 농업기계,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정보통신, 전파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경영, 승강기, 소방설비(기계분야), 조선, 반도체설계, 방송통신, 교통)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 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 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급형, 사출급형, 기계정비, 판금제관, 농업기계, 배관, 전기, 전기공사,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제어,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항공,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영사, 승강기, 교통, 조선)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급형제작, 기계정비, 판금제관, 배관, 전기, 전자기기, 통신설비, 항공정비, 가스)	사업용조종사, 항공사, 항공기관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장정비사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공 업 기 (전 기)	기술사(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소방, 품질관리,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 응용,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방사선취급감독자,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수), 원자로조종감독자, 핵연료물질취급감독자, 원자로조종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품질경영, 소방설비<전기분야>,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전자, 전자계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원자력, 에너지관리) 기능장(전기, 전자기기)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 핵연료물질취급자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산업안전, 전기철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공업계측제어, 반전자회로설계, 전자계산기제어, 에너지관리)
공 업 속 (금 속)	기술사(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제련, 비파괴검사, 품질관리)	기사(금속재료,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기능장(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압연, 제선, 제강)	산업기사(금속재료, 표면처리, 주조, 금속제련,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품질경영)
공 업 유 (섬 유)	기술사(섬유, 생사, 의류, 품질관리)	기사(섬유, 의류, 품질경영, 산업안전)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섬유,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패션머천다이징, 편물, 품질경영, 산업안전)
공 업 공 (화 공, 가 스)	기술사(화공, 세라믹, 화공안전, 가스, 식품, 품질관리)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제조, 세라믹, 위험물, 산업안전, 가스, 식품, 품질경영)
공 업 원 (자 원)	기술사(자원관리, 지질 및 지반, 광해방지, 화약류관리, 해양)	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응용지질, 광해방지)	산업기사(지하수, 광산보안, 화약류관리, 굴착, 해양조사)
농 업 업 (농 업)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식품, 생사)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토양환경, 유기농업, 화훼장식)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산업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식품, 농림토양평가관리, 유기농업)
농 업 산 (축 산)	기술사(축산,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축산, 식품)	산업기사(축산, 식품) 가축인공수정사
농 지 (지)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임산가공, 조경)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해양 수산 (선박)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1·2급항해사, 1·2급기관사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표지) 3·4급 항해사, 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보건	기술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 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인 간공학)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기환 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임상심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보건교육사 1급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성동위 원소취급자 <일반> , 영양사, 입 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 산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식품, 대 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 물처리,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 사 2급)
식품위생	기술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 관리, 포장, 방사선관리)	기사(축산, 식품, 수산제조, 품질경 영, 포장) 영양사, 위생사	산업기사(축산, 식품, 식품, 품질경 영, 포장)
의료기술	기술사(방사선관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 ,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 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일반> , 임상병리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 기공 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간호 사 기사(응급구조사 1급, 의지보조기)	산업기사(응급구조사 2급)
의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무	약사, 한의사, 한약사		
간호		간호사, 조산사	
보건진료		간호사, 조산사	
환경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수자원 개발,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방사 선관리, 광해방지, 토질 및 기초, 토 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정,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 관리, 지질 및 지반, 기상예보) 의사, 약사, 수의사, 환경측정분석 사(대기수질)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 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 험, 토목, 조정, 산림, 해양환경, 농 화학,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 상, 식품보호, 토양환경, 자연생태 복원, 생물분류, 광해방지) 기능장(산림) 위생사	산업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 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 료시험, 토목, 조정, 산림, 해양조 사, 산업위생관리, 식품보호, 농림 토양평가관리, 자연생태복원)
항공	기술사(항공기관, 항공기계, 정 보통신), 운송용조종사	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설비, 방 송통신) 기능장(항공정비, 통신설비) 항공공학장정비사, 사업용조종사, 항 공사, 항공정비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운항관리사	산업기사(항공, 정보통신, 무선 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차기용조종사
시설 (도시계획)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구조, 항 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축구조, 건축시 공, 도시계획, 조정, 지적, 교통, 지 질 및 지반), 건축사	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건축, 조정, 지적, 도시계획, 교 통, 응용지질) 기능장(건축일반시공)	산업기사(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건축, 건축일반시공, 조정, 지적, 교통)

계급 직렬	5급	6급·7급	8급·9급
시설 (토목, 수도 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 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 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 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광해방지)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 시계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콘크리트, 광해 방지)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 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콘크리트)
시설 (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 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 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건축사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 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 재시공)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 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 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 비)
시설 (지적)	기술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간 정보)	산업기사(지적, 측량 및 지형공 간정보)
시설 (측지)	기술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 적)	산업기사(측량 및 지형공간정 보, 지적)
시설 (교통)	기술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토 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 구조, 도로 및 공항, 철도, 토목 시공, 건설안전)	기사(교통, 도시계획, 조정, 측 량 및 지형공간정보, 지적, 건설 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건설 안전)	산업기사(교통, 조정, 측량 및 지형, 공간정보, 지적, 철도토목, 건설재료시험, 토목, 건설안전)
방송통신	기술사(정보통신, 컴퓨터시스 템응용, 전자응용)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전자, 무선설비, 방송통신, 정보 처리, 전자계산기) 기능장(전자기기, 통신설비)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전 자, 정보처리, 무선설비, 방송통 신, 전자계산기제어)
위생		기술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질관리, 포장) 기사(식품, 축산, 수산제조, 품 질경영, 포장) 위생사, 영양사	산업기사(식품, 축산, 품질경 영, 포장) 환경기능사
시설관리		기능장(전기) 기사(전기, 전기공사, 토목, 건축설 비, 건축, 소방설비<전기분야, 기 계분야>, 조정)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기계 정비, 토목, 건축설비, 건축, 소 방설비<전기분야, 기계분야>, 조 경) 기능사(전기, 기계정비, 조정)
토목운영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 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 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 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 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 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 획, 조정,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 질, 교통)	산업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 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정, 지적, 건설안전, 교통)

건축운영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기능장(건축일반시공, 건축목제시공) 건축사	산업기사(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목공, 목재창호,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통신운영	기술사(정보통신) 기사(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기능장(통신설비, 전자기기)	산업기사(정보통신, 통신선로, 사무자동화, 전파전자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전자, 정보처리)
전기운영	기술사(방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전기안전, 품질관리) 기사(전기, 전기공사,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능장(전기공사, 전기기기)	산업기사(전기, 전기공사, 전기기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안전, 소방설비<전기분야>, 품질경영, 승강기]
기계운영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정보통신, 기계안전, 공장관리,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자동차 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소방설비<기계분야>, 품질경영) 기능장(기계가공, 에너지관리, 철도차량정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정비, 용접, 금형제작, 기계정비, 관급제관, 배관)	산업기사(윤활관리, 컴퓨터응용가공, 기계조립,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에너지관리, 철도차량, 철도운송, 자동차 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치공구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 사출금형, 기계정비, 관급제관, 농업기계, 배관, 정보통신, 에너지관리, 산업안전, 품질관리, 소방설비<기계분야>, 영사)
화공운영	기술사(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화공안전, 가스, 품질관리, 식품) 기사(화공, 화약류제조, 화공, 세라믹,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기능장(위험물관리, 가스)	산업기사(화공, 화약류 제조, 세라믹, 위험물관리, 산업안전, 가스, 품질경영, 식품]
가스운영	기술사(가스, 화공, 화공안전) 기사(가스, 화공, 산업안전) 기능장(가스, 위험물관리)	산업기사(가스, 위험물관리, 화공)
산학협동 운영 산학협동 운영	기술사(조선, 기계, 산업기계설비) 기사(조선, 일반기계, 항로 표지) 1·2·3·4급 항해사 1·2·3·4급 기관사	산업기사(조선, 컴퓨터응용가공, 항로표지) 5·6급 항해사 5·6급 기관사

농림운영	기술사(종자, 산림, 축산, 농화학, 생사, 조경, 식품) 기사(종자,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농화학, 조경,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기능장(산림)	산업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임산가공, 조경, 식품)
보건운영	기술사(산업위생관리,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방사선 관리) 위생사, 작업치료사,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수의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사, 치과위생사, 간호사, 조산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임상병리사 1급, 응급구조사 1급	산업기사(산업위생관리,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식품) 임상심리사 2급, 응급구조사 2급

2. 연구사

계급	연구사
직렬	
공업연구	기술사(기계, 공조냉동기계, 철도차량,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금속재료, 표면처리, 금속가공, 금속세련, 비파괴검사, 화공, 세라믹, 고분자제품, 발송배전, 건축전기설비, 전기응용, 철도신호, 전기철도,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컴퓨터시스템응용, 정보통신, 조선, 항공기관, 항공기체, 섬유, 생사, 의류, 자원관리, 화약류관리, 해양, 지질 및 지반, 제품디자인, 원자력발전, 방사선관리,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공장관리, 품질관리, 포장, 식품)
농업연구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농화학, 생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식물보호, 농화학, 메카트로닉스,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농업연구(산업곤충)	기술사(생사)
농업연구(축산)	기술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기사(축산, 식품, 폐기물처리, 생명공학) 수의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축인공수정사
농업연구(농공)	기술사(기계, 산업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기계공정설계, 용접, 금형, 비파괴검사,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도시계획, 조경, 기계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가스, 품질관리) 기사(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방사선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토목, 도시계획, 조경, 산업안전, 건설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설비, 가스, 품질관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농업연구(농식품)	기술사(식품, 농화학, 축산) 기사(식품, 바이오화학제품제조, 축산)
농업연구(농식품개발)	영양사, 위생사
녹지연구	기술사(종자, 산림, 농화학, 조경) 기사(종자, 산림, 임업종묘, 식물보호, 입산가공, 농화학, 조경)
해양수산연구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식품)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식품, 생명공학)
보건연구	기술사(식품, 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방사선관리, 광해방지) 기사(식품, 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산업위생관리, 광해방지, 인간공학, 의공)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수의사, 약사, 한약사,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 <특수·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간호사, 조산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작업치료사, 위생사, 영양사, 응급구조사 1급, 응급구조사 2급

계급	연구사
직렬	
환경연구	기술사(대기관리, 수질관리,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고분자제품,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토목시공,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 화공안전, 산업위생관리, 지질 및 지반, 방사선관리, 기상예보, 자연환경관리, 토양환경, 광해방지) 기사(대기환경, 수질환경, 소음진동, 폐기물처리, 화공, 건설재료시험, 토목, 조경, 산림, 농화학, 해양환경, 산업위생관리, 응용지질, 기상, 식물보호, 자연생태복원, 생물분류, 토양환경, 광해방지) 의사, 수의사, 약사, 위생사, 환경측정분석사
시설연구(토목)	기술사(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항만 및 해안, 도로 및 공항, 철도,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지질 및 지반, 교통) 기사(건설재료시험, 철도토목,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도시계획, 조경, 지적, 건설안전, 응용지질, 교통)
시설연구(건축)	기술사(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전기설비, 건설안전, 소방) 기사[건축설비, 건축, 실내건축, 건설안전, 소방설비, 소방] 건축사

3. 지도사

계급	지도사
직렬	
농촌지도	기술사(종자, 시설원예, 산림, 축산, 농화학, 기계, 공조냉동기계, 차량, 건설기계, 용접, 금형, 산업기계설비, 토질 및 기초, 토목품질시험, 토목구조,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농업토목, 토목시공,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생사, 조경, 지적, 기계안전, 건설안전, 건설안전, 식품, 지질 및 지반, 폐기물처리, 염색가공,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관리, 폐기물처리, 식품) 기사(종자, 시설원예, 산림경영, 산림공학, 임업종묘, 식물보호, 축산, 입산가공, 농화학, 일반기계, 메카트로닉스, 공조냉동기계, 자동차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기계설계, 정밀측정, 용접, 프레스금형설계, 사출금형설계, 농업기계, 건설재료시험, 토목,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조경, 지적, 산업안전, 건설안전, 식품, 응용지질, 폐기물처리, 섬유, 의류, 조경, 산업위생관리,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식품) 수의사, 청소년지도사, 위생사, 영양사, 평생교육사 1·2급, 생산기사 2급(1999년 3월 27일 이전에 취득한 것에 한함), 사회조사분석사 1급, 사회조사분석사 2급, 방사선동위원소취급자(일반), 방사선취급감독자, 가축인공수정사,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어촌지도	기술사(해양, 수산양식, 어로, 수산제조, 수질관리) 기사(해양환경, 해양자원개발, 해양공학, 어업생산관리, 수산양식, 수산제조, 수질환경)

4. 자격증의 등급별 가산점

구분	가산점
해당 직렬의 해당 계급 또는 상위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5
해당 직렬의 바로 하위 계급에서 인정하는 자격증	0.25

비고 : 1. 영 제55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경우와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의 관계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시에 위의 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격증을 소지함으로써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격증에 가점평정을 할 수 없다.

2. 변경 또는 폐지된 자격증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령 등에 따라 그 자격이 계속 인정되는 자격증은 일반직 공무원의 가점대상 자격증으로 인정한다.

실적 가산점 부여기준 및 배점(제25조의2 관련)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비고	
1. 제안채택 및 업무개선 등	1-1 담당업무관련 중앙제안 채택 시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2.0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1-2 담당업무관련 시제안 채택 시 · 금 상 · 은 상 · 동 상 · 장려상 · 노력상	1.5점 1.2점 0.9점 0.6점 0.3점	· 주제안자는 배점의 만점을 인정 · 부제안자는 배점의 1/2을 인정 · 제안에 따른 특별승진자는 가점 제외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사 비대상		
	1-3 담당분야에서 새로운 업무 발굴 및 담당업무 개선 실적이 탁월한 경우	1.0점 이내	· 제도나 기술개선 등을 통한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함		
	1-4 우수 학습동아리(최우수, 우수, 장려)로서 그 연구결과가 구정에 반영시행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을 경우 · 구정의 당면과제 및 현안문제 해결 등	1.0점 이내	· 주제안자 1인, 부제안자 2인 이내로 배점은 차등부여 ·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2. 주요시책 (idea)발굴	2-1 주요시책을 발굴·추진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둔 사람	1.5점 이내	· 국장 및 소속기관장이 대상자 추천 · 성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3. 예산절감 기여	3-1 제도 및 기술의 개선 등을 통한 예산절감의 경우 · 연간 1억원 이상 · 연간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연간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1.5점 이내 1.0점 이내 0.5점 이내	· 예산절감에 직접 기여한 수행자 1인에 한하여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4. 프로젝트팀 (TF)실적우수	4-1 현안·주요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프로젝트팀의 구성원 중 업무 추진 실적이 인정된 사람(팀) ※ 일상적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팀 제외	0.5점 이내	· 실적평가부서의 평가결과 그 실적이 인정된 경우에 한함 · 평가부서에서 대상자 일괄 신청	
	5. 업무추진 우수	5-1 특별과제, 현안과제 등 업무추진에 크게 기여하여 근무성적평정확인자가 업무추진 우수자로 추천,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람	1.5점 이내	· 업무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최대 2인까지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5-2 전국단위 소관업무평가 결과 기관 포상을 받은 경우 · 최우수상 · 우수상		0.7점 이내 0.5점 이내	· 관행적 표창을 제외하고 실질적인 업무평가 결과에 한함 · 당해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하고 수상에 결정적 역할을 한 실질적 기여자 2인까지 해당		

가산점항목	부여기준	배점	산정방법	비고	
	5-3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특수업무 수행실적의 경우	0.5점 이내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 심의로 결정된 특수업무추진 실적적 기여자 2인까지 인정 ·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5-4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되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산점을 부여 받을 수 있도록 인정받은 사람	0.5점 이내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의 기여도 심사		
6. 격무업무 우수근무자	6-1 격무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 · 난이도 A · 난이도 B	0.5점 0.3점	· 매년 설문을 통해 격무업무 선정 후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격무업무단위(인원) 및 기점 결정(업무의 난이도에 따라 0.5점 또는 0.3점으로 결정) · 대상업무 최소 근무기간 : 1년 이상 (각 정기평정일 기준) ·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업무실적의 인정여부 심사·결정		
	7. 고질적 장기민원 해결 기여자	7-1 고질적인 집단·장기민원 해결에 크게 기여한 사람 · 협의·설득을 통한 민원종료 · 민원해결과정에서 탁월한 업무실적(특별대책 시행 등)	1.5점 이내 1.0점 이내	· 6월 이상 장기화된 민원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민원 · 평정기간 전부터 연속된 경우 최종심사시 인정(실질적 기여자 1인까지 인정) ·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통한 심사	
8. 구정평가 결과우수 / 구 자체	8-1 구정평가제 결과 우수자 및 우수부서 · 최우수 부서(3인 이내) · 우수 부서(2인 이내) · 장려 부서(1인)	1.0점 0.5점 0.3점	· 수상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수상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자		
	9. 상사업비 확보	9-1 상급기관 행정역량평가 결과가 우수하여 상사업비 확보 시 · 3억 이상 · 1억 이상 3억 미만	1.0점 0.5점	· 상사업비 확보와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 수상부서에서 1년 이상 근무자 (2인 이내)	
	10. 협업사무 추진실적 우수	10-1 지정된 협업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실적을 거둔 사람으로, 근무 성적평정확인자가 협업사무 추진 우수자로 추천하여 실적가산점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사람 · 총괄추진 담당자 · 협업추진 담당자	1.0점 이내 0.5점 이내	· 협업사무 추진에 직접 기여한 실질적 기여자 중 총괄부서 추진 담당자 1인 외 협업부서별 추진 담당자 각 1인에 한함 · 협업사무 추진 실적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한함	

1.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가능)

응시원서 작성요령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주 소	(우)			
전자우편		복수국적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 화		휴대전화		



※응시번호		응시표 ()임용시험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생년월일			
20 년 월 일 ○○○장 ㉸			
사 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 사진 (3.5cm×4.5cm)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이어야 함]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사진위의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응시표를 분실하였을 때는 사진 1매를 가지고 시험시작 1시간 전까지 ○○○로 오시면 재교부 받을 수 있습니다.
3.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 및 필기도구를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사진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상반신·천연색 사진(3.5cm×4.5cm, 여권용)으로 2매 모두 동일원판을 붙임
7.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2. 공채·경채 공통 필기시험 미 실시 응시원서 서식(사진 제출 불가)

응시원서

본인은 ()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하며 다음 사항을 서약합니다.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를없으며 만일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5년간 응시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년 월 일
○○○장 귀하

※응시번호		성명	(한글)
응시직급 (응시분야)			(한자)
주민등록 번호	-	복수국적 해당여부	
주소	(☎)		수입증지 붙이는 곳
전자우편			
전화 (휴대전화)			

응시표 () 임용시험

※응시번호		응시직급 (응시분야)	
성명			
20 년 월 일 ○○○장 ㉞			

주의사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30분전까지 지정된 좌석에 착석하여야 합니다.

보완사항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

응시원서 작성요령

◎ 응시원서는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응시번호」 : 기재하지 않음
2. 응시직급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직급을 기재함
(예, 행정9급, 전산9급, 공업9급 등)
- (응시분야) : 응시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의 분야를 기재
(○○분야, △△분야, □□분야 등)
3. 주소 : 현재 거주하는 곳(우편물 수령 등)을 정확히 기재함
4. 성명·주민등록번호·전자우편·(휴대)전화 :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재함
5. 복수국적 : 복수국적자의 경우 취득한 외국국적명 기재
6. 수입증지
- 5급 이상 : 1만원, 6·7급 : 7천원, 8·9급 : 5천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로서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경우 수입증지 대신 해당 증명서 첨부

<p>1. (생략)</p> <p>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u>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u></p> <p>제25조의2(자격증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u>평정규칙</u>」 제2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 및 가산점은 별표 15와 같다.</u></p> <p>② 「지방공무원 <u>평정규칙</u>」 제23조제2항에 따른 언어능력검정 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가산점은 <u>별표 15의2와 같다.</u></p> <p><신설></p>	<p>1. (현행과 같음)</p> <p>2. -----</p> <p>-- <u>지도사</u></p> <p>제25조의2(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u>평정규칙</u>」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u>규칙으로 정하는 가산점은 별표 15, 별표 15의2, 별표 15의3과 같다.</u></p> <p><삭제></p> <p>③ 「지방공무원 <u>평정규칙</u>」 제25조의2 및 제2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u>합산하는 실적 가산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7조제3항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점수로 승진후보자 명부에 반영한다.</u> 이 경우 「지방공무원 <u>평정규칙</u>」 제27조제3항 중 “<u>근무성적평정점</u>” 및 “<u>평정점수</u>”는 각각 “<u>실적 가산점</u>”으로 본다.</p>
--	--

<p style="text-align: center;">【개정이유 및 주요내용】</p> <p>1. 개정이유</p> <p>「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관련 규정 및 자격증 등을 정비하고, 소속 공무원 평정 관련 실적 가산점의 구체적인 부여기준 및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방법을 마련하고자 함.</p> <p>2. 주요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신규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용어를 지원대상자로 변경함(제6조의2). ○ 국가 방호직렬 채용과의 형평성문제 해소를 위해 지방방호직렬 신체검사 규정 조항을 삭제함(제15조, 별표 4의2). ○ 가산점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실적 가산점의 부여 기준 및 승진후보자 명부 반영 방법을 신설함(제25조의2, 별표 15의3). ○ 경력경쟁임용 및 가산가점대상 자격증 항목을 정비함(별표 2, 별표 4,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별표 7의4, 별표 9, 별표 11, 별표 15). ○ 기타 미비사항을 보완 및 개선함(제14조, 제24조의2, 별표 7의3).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박정현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 규칙 제905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연15퍼센트”를 “연12퍼센트”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 ③ (생 략) ④ 사용료를 납부기간 내에 납부 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 은 <u>연15퍼센트</u> 로 한다. ⑤ (생 략)	제9조(사용료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 <u>연12퍼센트</u> -----. ⑤ (현행과 같음)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이유

계속되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변화된 경제여건과, 최근 개정된 유사 제도(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 조세법령상 증가산금)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용료 연체요율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용료의 연체요율을 인하함(제9조).
 - 연15퍼센트 → 연12퍼센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신탄진동 116-7, -8	신탄진로 852-1	2020. 12. 11.	건물신축	신탄진으로 가는 주요 도로의 기능 반영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지적과(☎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공시송달 공고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을 직권말소 하였으나, 소유자의 주소 불명으로 말소내용을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건축물대장 말소내용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시송달 방법 :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1.공고기간 : 2020. 12. 11. ~ 2020. 12. 25.(14일간)
- 2.공고장소 : 대덕구청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 4.공시송달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대장 직권말소					
나.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대장 말소					
다.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건축물대장말소)	위치	소유자	층수	구조/지붕	용도	면적
	오정동 651	변인성	지상1층	목조/초가지붕	주택	26.4㎡
	오정동 651	최철교	지상1층	목조/초가지붕	주택	59.5㎡
오정동 651	최종대	지상1층	목조/세와	주택	49.59㎡	
라.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2조제3항					

5. 유의사항

위 사항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서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덕구청 건축과(☎042-608-515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의견제출 내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대덕구청장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11호 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 주시고, 의견을 제출하신 후에는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 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담당부서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건축과

○ 연락처 : 042)608-5157, 모사전송(FAX) 042)608-3843

도시계획시설(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 완료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고시 제2020-108(2020.10.6.)호로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고시한 도시계획시설(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이 완료되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완료 공고 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동 138-4 / 원비래어린이공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 도시계획시설사업(원비래어린이공원 조성)
 - 사업의 명칭 : 새로운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1,630.00㎡
4. 사업 시행자
 - 성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주 소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5. 사업기간 : 실시계획 고시일 ~ 2020. 12. 31.
6. 준공(검사)일 : 2020. 11. 27.
7. 관계도서 : 게재생략. 끝.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처분사전통지(청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 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청문실시
2.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처분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
4. 공시송달 내역

업종	업소명	업소 소재지	대표자	위반사항	처분내용	비고
식품제조가공업	㈜한가죽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31번길 245, D동 지하층(대화동)	황*성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20. 12. 11. ~ 12. 28. (18일간)
6. 청문일시 : 2020. 12. 28.(월) 10:00~18:00
7. 청문장소 : 대덕구청 위생과(별관 2층)
8. 유의사항
 - 상기 공고기간까지 대덕구청 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됨을 알려드립니다.
9.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대덕구청 위생과 ☎(042)608-6964. 끝.

도로점용(굴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전열병합발전 주식회사 대표이사가 신청한 도로의 점용(굴착)허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번호	노선명	굴착목적	굴착구간	매설관경(mm)	포장종류	연장(m)	공사기간	일시점용(㎡)	영구점용(㎡)
1	대덕구 신일동로 93번길	증기공급배관 신규 설치	신일동 1688-7번지	200.00	아스콘	13.0	착공일로부터 21일간	15.60 (착공일로부터 21일간)	1.90

끝.

위치도 및 현장사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8-7번지 일원
위 치 도	
굴착위치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일동 1688-7번지 일원
사 장 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 2020-1187호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81조, 「행정절차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청문사항을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 처분사전통지(청문) 송달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영업소 폐쇄
3.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제37조제4항,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89조
4.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역

업종	업소명	대표자 (영업자)	소재지	위반 사항	처분 내용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아이엔에스수산 주식회사	왕○수	대전광역시 대덕구 오정로 118 (오정동)	영업소 시설물 전부 철거 (현재 타 업종이 영업중에 있음)	영업소 폐쇄

5. 공고기간 : 2020. 12. 11.(금) ~ 12. 24.(목) (14일간)
6. 청문일시 : 2020.12.28.(월) 10:00~18:00
7. 고지사항

- 상기 공고기간까지 대덕구청 위생과에 의견을 제출하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청문 일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행정절차법」 제35조 제2항에 의거 청문을 종료하고 「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행정처분(영업소폐쇄) 됨을 알려드립니다.

8. 문 의 처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위생과 (식품유통팀 ☎ 042-608-6963).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0-1193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 전 광 역 시 대 덕 구 청 장

1. 공고명칭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사전부과, 본부과, 압류예고 압류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대상 : 붙임 참고
3. 공고(의견제출) 기간 : 2020. 12. 11. ~ 2020. 12. 25.(14일간)
4. 기타
 - 상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위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공고기간 내에 사전부과 대상자는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심한장애 이상), 국가유공자(상이등급 3급 이상), 미성년자는 과태료 감경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금액의 50%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체납자의 경우 재산이 압류(대체) 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 대덕구청 사회복지과(☎042-608-680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	장**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로*0가길 *3, 1층(노량진동)	96주****	2020-11-07 13:39:00	석봉동 713-22	2020.11.24	2020.11.27	폐문부재
2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218번길 62, 1*동 1**호(와동, 현대아파트)	대전80자****	2020.11.18 20:12:40	와동 111 부근	2020.11.26	2020.11.30	폐문부재
3	새빛**(***)	대전광역시 대덕구 종리로 *5, 2층(종리동)	42머****	2020.11.21 07:09:22	법동 283-1 부근	2020.11.26	2020.11.30	폐문부재
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234번길 15, 1**동 19**호(덕암동, 덕암마을아파트)	69보****	2020-11-14 17:50:07	평촌동 541-14	2020.11.24	2020.12.01	폐문부재
5	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개봉로1길 1**, 5**호(개봉동, 동서아파트)	54구****	2020.11.14 07:38:52	석봉동 787 부근	2020.11.26	2020.12.01	폐문부재
6	류**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운성*길 *0	72도****	2020.10.05 10:22:28	신탄진동 220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7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비래서로*번길 *0, 2층(비래동)	04조****	2020-09-18 13:57:00	동촌당로 61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8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60, 1**동 7**호(법동, 삼익소월아파트)	27마****	2020.10.09 22:55:38	송촌동 444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9	송**	대전광역시 대덕구 새말*길 1*(상서동)	30너****	2020.10.09 04:47:06	와동 111 부근	2020.12.04	2020.12.07	폐문부재
10	조**	대전광역시 동구 회남로 2**-4*(신하동)	67더****	2020.10.11 15:50:13	비래동 4-11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11	김**	경상북도 경주시 능원길 22, 1**동 2**호(도지동, 코아루그랑블)	151****	2020.10.25 21:52:23	상서동 373-21 부근	2020.12.04	2020.12.07	폐문부재
12	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14번길 60, 3**동 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333마****	2020.08.29 23:17:44	송촌동 444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13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대로1520번길 77, 1**동 11**호(목상동, 평화로온아파트)	106모****	2020.08.30 07:43:28	목상동 207-25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14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 200, 1**동 2**호(평촌동, 행복마을아파트)	53보****	2020.09.05 15:16:43	평촌동 540-1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15	최**	대전광역시 대덕구 계족산로 136, 5**동 15**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46조****	2020.09.06 18:55:06	상서동 산 47-25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 201 -

연번	소유자 (임차인)	주소	차량번호	위반일시	위반장소	발송일	반송일	반송사유
16	장**	충청남도 공주시 우성면 산막골길 *7	충남81배****	2020.09.04 18:39:34	법동 195-1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17	성**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114번길 60, 3**동 13**호(송촌동, 선비마을아파트)	333마****	2020.09.10 19:10:42	송촌동 444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18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60, 1**동 7**호(법동, 삼익소월아파트)	27마****	2020.09.13 19:35:48	송촌동 444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19	김**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78, 1**동 3**호(법동, 보람아파트)	51오****	2020.09.11 19:22:29	종리동 462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20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60, 1**동 7**호(법동, 삼익소월아파트)	27마****	2020.09.22 02:53:08	송촌동 444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21	오**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88번길 40, *동 1**호(평촌동, 국제주택)	26루****	2020.09.24 13:02:57	오정동 500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22	임**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촌당로 160, 1**동 7**호(법동, 삼익소월아파트)	27마****	2020.09.27 09:00:10	송촌동 444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23	김**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신대동로 *1	31무****	2020.08.10 11:25:06	상서동 828-15 부근	2020.12.04	2020.12.08	폐문부재
24	이**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397번길 *1(읍내동)	36저****	2020.08.18 20:48:57	종리동 462 부근	2020.12.04	2020.12.07	수취인불명
25	쥬**산업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영규대로 5**-*0, 1층	58루****	2020.08.24 19:50:18	석봉동 770 부근	2020.12.04	2020.12.07	폐문부재

- 202 -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공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인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일자 : 2020. 12. 11.(금)
2. 공인(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내역 : 1개

연번	구분	공인명	서체 및 규격	인영	등록일자	사유
1	공인 등록	대전광역시대덕구공무직징계위원회 위원장인	훈민정음체 / 3.6 cm 정방형		2020. 12. 11.	신규등록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고령화·저출산의 심화 및 1인 가족의 일반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복지수요가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구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기부를 활성화하여 복지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 가. 재단의 설립목적과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재단의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 다. 재단의 재산 및 정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라. 재단의 임원, 이사회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재단의 자료제공 및 운영재원, 사업연도,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 바. 재단의 지도·감독 등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6761, FAX : 042-608-3832, E-mail : cmh811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최명희(전화 : 042-608-67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 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복지시스템을 구축하여 구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2.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자원의 발굴 및 지원·협력에 관한 사업
3. 민·관 협력 및 사회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지원
4.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기획연구·조사 및 복지프로그램의 개발·보급
5.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서민 지원 사업

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컨설팅

7.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

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에서 "사회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대전광역시·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기본 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제1호 이외의 자의 기부금 중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사업 수익금, 기타 수입금 중 이사회 또는 내부규정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4. 그 밖에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모든 재산으로 하고,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한다.

④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

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의결권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로 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 호선하며, 대표이사를 겸한다.

③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 의사결정 방법 등은 관계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를 총괄한다.

③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④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감사 결과를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이사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조직 및 직원) 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재단의 직원은 공개 채용하며,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③ 재단의 조직·정원·직원의 임용 및 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자료제공) ① 재단은 구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

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출연금 교부)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13조(기금)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14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구의 출연금
2. 기금의 이자 수입금
3. 재단의 사업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구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세입·세출에 관한 예산·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예산·결산보고서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

제17조(지도·감독 등) ① 구청장은 재단의 운용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하게 하거나, 그 업무를 확인 및 검사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산의 취득 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제18조(공유재산 사용·허가, 대부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0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쳐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정관을 작성하고, 재단의 설립에 필요한 내부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이 한 재단 설립준비 행위는 재단이 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설치 및 관리·운용조례」에 따라 대전광역시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은 제2조에 따른 대덕복지재단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대덕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되기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예산의 조치) ①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재단의 최초 사업연도) 재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재단의 설립일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비용추계서

1. 의 안 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비용발생 요인

- 대덕복지재단 설립에 따른 구 출연금 /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나. 관련조문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 「지방재정법」 제18조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3. 비용추계 전제 : 계속사업(매년시행)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비용의 추계는 「대덕복지재단 설립 타당성 조사 연구 결과보고서」를 기초로 실제 사업 추진 예상 규모를 반영하여 추계

나. 추계결과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합계
세입	소계(a)	250	258	266	275	284	1,333
	국비보조금	0	0	0	0	0	0
	시비보조금	0	0	0	0	0	0
	지방세	0	0	0	0	0	0
	세외수입	0	0	0	0	0	0
	기타(구비)	250	258	266	275	284	1,333
세출	소계(b)	250	258	266	275	284	1,333
	인건비	200	206	213	221	229	1,069
	사무실 운영	50	52	53	54	55	264

5. 비용추계(세입, 세출) 산출내역

- 세입 : 250백만원
- 세출 : 250백만원
 - 재단설립을 위한 출자 : 170백만원 / 대덕구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승계
 - 인건비 및 사무실 운영비
 - a. 인건비 : 200백만원
 - b. 사무실 운영비 : 50백만원 / 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

6.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1년)	2차년도 (2022년)	3차년도 (2023년)	4차년도 (2024년)	5차년도 (2025년)
소 계		250	258	266	275	284
자체수입(구비)		250	258	266	275	284

- 7. **부대의견** : 해당사항 없음
- 8.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 9. **작성자** : 복지정책과장 박진성

붙임 1 **관계법령**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제33조(법인설립의 등기) 법인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0조(사단법인의 정관) 사단법인의 설립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규정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규정
6. 사원자격의 득실에 관한 규정
7. 존립시거나 해산사유를 정하는 때에는 그 시기 또는 사유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① 주무 관청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신청을 받으면 관계 사실을 조사하여 재단법인은 출연재산의 수입, 사단법인은 회비·기부금 등으로 조성되는 재원(財源)의 수입(이하 각 "기본재산"이라 한다)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설립허가를 한다.

② 주무 관청은 공익법인의 설립허가를 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 징수, 수혜(受惠) 대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공익법인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지정·고시 등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

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③ 출자·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3장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제1절 정관(定款)

제8조(정관) ① 출자·출연 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출자·출연 기관의 형태와 특성이나 업무 내용상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
4. 자본금 또는 출연금
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
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7. 임직원에 관한 사항
8. 이사회 운영
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
10. 예산과 회계
11. 정관의 변경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출자·출연 기관은 제5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으로 지정된 후 3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정관을 작성하여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절 임직원의 인사 등

제9조(임원) ① 출자·출연 기관에는 임원으로 기관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감사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둔다. 다만, 이사와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출자·출연 기관별 형태, 특성과 업무내용을 고려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당연직인 경우는 제외한

다)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임명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은 법령과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무와 책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직무상 의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
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해당 기관에 손실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직무 여부와 관계없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

④ 주무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원이 제3항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게을리한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그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그 출자·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이익과 자신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하지 못한다. 이 경우 감사가 출자·출연 기관을 대표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6호의3, 제6호의4, 제7호 및 제8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직원의 채용) ① 출자·출연 기관은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보다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총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자격을 가진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공고를 하여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에는 응시자에게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성별·신체조건·용모·학력·연령 등에 대한 불합리한 제한을 두거나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원 채용의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을 내부 규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조직과 정원 등의 운영) 출자·출연 기관은 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항을 해당 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하고, 그 범위에서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예산과 회계

제16조(회계연도) 출자·출연 기관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회계처리의 원칙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경영 성과 및 재무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처리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사업 분야별로 구분하여 회계 처리할 수 있다.

③ 출자·출연 기관이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④ 출자·출연 기관은 공정한 경쟁이나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해서는 2년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른 계약 심의위원회에서 그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⑤ 출자·출연 기관은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4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은 자 외에는 적합한 시공자·제조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예산의 편성 등) ① 출자·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② 출자·출연 기관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회계 관계 규정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산의 편성 등과 그 보고와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절 재정 지원과 해산 등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1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 ① 출자·출연 기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

업을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국가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 중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관한 경비의 범위, 비용부담의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5절 지도·감독 등

제25조(지도·감독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해당 출자·출연 기관을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에 위탁한 사업
2.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2.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체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26조(검사·보고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적어도 3년마다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기관

제4장 경영실적의 평가와 공시(公示) 등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산정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직접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독점적 사업권을 부여받은 기관의 경우에는 그 위탁 업무나 독점적 사업으로 인한 수입액을 포함한다)이 해당 기관 총 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인 기관

3.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미만인 기관 중 제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분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해당 기관 자본금 또는 재산의 100분의 25 이상에서 100분의 25 미만으로 변동되는 행위를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
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
3. 전년도 결산서
4. 최근 3년간 경영실적

5.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

6. 그 밖에 경영실적의 평가와 관련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7조(「상법」과 「민법」의 준용) 출자·출연 기관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출자기관은 「상법」을 준용하고, 출연기관은 「민법」을 준용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출자·출연 기관의 지정·고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4조에 따라 출자 또는 출연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법 제5조**에 따른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의 대상이 되는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 중이라도 **법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의 법인격 또는 명칭 등이 변경되거나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5조** 본문에 따른 주무기관의 장(이하 "주무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출자·출연 기관의 지정, 지정 해제 또는 변경 지정에 대한 고시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2.>

1.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의 평가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의2 제4항**에 따른 인적사항 및 비위행위 사실 등의 공개에 관한 사항
3.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4.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지방의원은 제외한다) 3명 이내

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

3. 법조계·경제계·언론계·학계 및 노동계 등의 분야에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심의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등에게 출석, 자료 제출 및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善導)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직업지원, 무료 숙박, 지역사회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在家福祉), 사회복지관 운영, 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의 사회복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아동복지법」
- 다. 「노인복지법」
- 라. 「장애인복지법」
-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 바. 「영유아보육법」
- 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차. 「입양특례법」
- 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 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 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 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거.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 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더. 「의료급여법」
- 러. 「기초연금법」
- 머. 「긴급복지지원법」

- 며. 「다문화가족지원법」
- 서. 「장애인연금법」
-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 치.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피. 「청소년복지 지원법」
- 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2.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

- 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4.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 5. "사회복지관"이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일정한 시설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 6.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중 사회복지사업을 통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 7. "보건의료서비스"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제34조(대부료의 감면) ① 일반재산의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2조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일반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대부받은 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그 재산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의 대부료와 그 이자를 일할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①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료 면제기간은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을 연간 사용료로 나눈 연수(年數)를 초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식재산(이하 "지식재산"이라 한다)의 사용료 면제기간은 20년으로 한다.

③ 건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을 기부채납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인 그 부지의 사용료를 제1항의 연간 사용료에 합산한다. 다만, 부지 사용료를 따로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부채납된 재산의 가액과 제3항에 따라 연간 사용료에 합산할 부지 사용료를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부지의 가액은 최초의 사용·수익허가 당시를 기준으로 제31조를 준용하여 산출하며, 사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4. 제13조제3항제8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⑥ 법 제24조제2항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특산물 또는 해당지

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13조제3항제21호 또는 제22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30 이내

제35조(대부료의 감면) ①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제29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대부하는 경우
3.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대부하는 경우
4. 제29조제1항제2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대부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

1. 제29조제1항제19호·제20호 또는 제25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
2. 제1호 외의 경우: 대부료의 100분의 30 이내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파견근무) ① 임용권자는 그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 지원이나 연수, 그 밖에 능력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가기관, 공공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을 포함한다), 국내외의 교육기관·연구기관, 그 밖의 기관에 일정 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특히 요구되는 특수업무의 효율적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 파견권자는 파견 사유가 소멸되거나 파견 목적이 달성될 가망이 없으면 그 공무원을 지체 없이 원래의 소속 기관에 복귀시켜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에서 파견된 임직원은 직무상 행위를 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파견받아 근무하게 하는 경우 파견 사유·기간·절차와 파견기간 중의 복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덕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2.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

대덕구형 동네 돌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기를 명확히 하고 대덕구 지역사회통합돌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과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동네 돌봄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 및 동네 돌봄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

나. 실행단 구성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안 제19조).

- 실무위원회 명칭을 실행단으로 변경함
- 실행단원의 수를 10명 이내에서 20명 이내로 변경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전화 : 042-608-4761, FAX : 042-608-3832, E-mail : ojs640@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복지정책과 담당자 오진수(전화 : 042-608-47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매년”을 “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기본계획”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실무위원회를”을 “실행단을”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실행단 구성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실무위원회를”을 “실행단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실행단은 실행단장”으로,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을 “20명 이내의 실행단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무위원회”를 “실행단”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무위원회의”를 “실행단회의”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6조(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동네 돌봄 활성화 및 추진환경 조성을 위한 동네 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	제6조(동네 돌봄 기본계획 수립) ① ----- ----- ----- ----- <u>지역사회보장계획 및 지역보건계획 수립시기에 맞추어 4년마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u>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협약의 체결) ① (생 략)	제9조(협약의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u>기본계획</u> 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② ----- ----- -- <u>기본계획 및 시행계획</u> ----- -----.
제10조(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 설치) ① (생 략)	제10조(지역사회 통합 돌봄 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협의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u>실무위원회를</u>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 --- <u>실행단을</u> ----- -----.
제1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에 부칠 안건을 미리 검토·조정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u>실무위원회를</u> 둘 수 있다.	제19조(실행단 구성 등) ① ----- ----- ----- ----- <u>실행단을</u> -----.
② <u>각 실무위원회는</u> 실무위원장	② <u>실행단은</u> 실행단장 -----

1명과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각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수당 등 지원) ①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지역케어회의 등에 출석한 위촉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협의회, 실무위원회의, 지역케어회의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20
명 이내의 실행단원-----

③ ----- 실행단-----
-----.

제21조(수당 등 지원) ① -----
-- 실행단회의-----

② ----- 실행단회의-----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네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2월 11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2.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하고 있는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

다.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라.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마. 교육교재, 실시방법, 강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바. 교육통지, 이수자 관리 및 불참자 통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사. 교육결과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전화 : 042-608-6575, FAX : 042-608-3823, E-mail : medio83@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문화관광체육과 담당자 이은주(전화 : 042-608-657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
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자를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

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대덕구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
2. 교육일시 및 장소
3. 교육내용 및 방법
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
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실시 방법) 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

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비용) ①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강료는 교육인원, 장소, 강사료 및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강사료의 지급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받은 수강료에 대한 수입과 지출 명세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자체기준을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이수자 관리) 구청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 업소 및 교육 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불참자 통지) 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결과 보고)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
2. 노래연습장업의 운영 및 재난방지방법 등 관련 제도가 변경된 경우
3.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협회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3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
 2. 제21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 2의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의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25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상호 등을 표시하지 아니한 자
-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 맡은 자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의 세부실시방법과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권한의 위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업무를 콘텐츠진흥원,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에 따른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08. 2. 29.>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 권한을 위탁받은 협회 또는 단체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제출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